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Ⅱ) - 어업분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박기령



기후변화법제 연구 17-17-④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II)**
-어업분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박 기 령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 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II)

-어업분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Study on Improving the legal Framework for Catastrophe Insurance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for Climate Change Response (II)

- Focus on Fisheries Disaster insurance -

연구책임자 : 박기령(부연구위원)

Park, Kiryoung

2017.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어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

-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기상현상과 다른 자연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됨
-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등 1차 산업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산업의 생존과 직결됨
- 어업은 전통적 형태의 어획 외에 양식업을 포함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 받으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 적응(adaptation) 및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가 어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됨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해양 활용을 위한 정책보험의 중요성 부각

- 파리협정 제8조에서 기후변화 적응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 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를 위하여 기후보험이나 기타 정책보험 등 위험을 분산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함

-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한 그 영향과 피해를 측정하고 분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중요함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해양 활용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수산 분야의 교육 및 남획 방지, 해양생태계의 보존·유지, 어획자원의 보호와 양식업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
- 최근 어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보험이 제시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양식물재해보험외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장보험법에 따른 어업인 안전보장보험 등의 정책보험이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어업 분야 정책보험을 다루는 법제를 분석하고, 어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제고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보험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

II. 주요 내용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주요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액의 10~15%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을 보완하여 피해어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임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는 재해보험의 종류를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나누고, 농작물 등 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장하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할
-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목적물, 보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고 있으며, 보험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구체적인 보험목적물 등에 대하여는 고시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함
-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합하여 다루고 있으나, 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중심으로 법령이 구성되어 있음
- 재해보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험목적물, 보상재해의 범위, 보험사업자, 재정지원, 재해보험에 대한 재보험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조문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음
- 손해평가나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등 정책보험사업의 운용에 있어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어 향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활용이나 확대, 발전에 한계가 있음

▶ 양식물재해보험 외에 기타 어업 분야 재해보험 체계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상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은 현재 소규모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한 주요 정책보험임
- 동 법의 사업대상자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으로서, 10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과 20톤 이상 어선에 대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대상으로 국고보조를 제공함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산업재해보험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2016년 12월 시행 시작, 농업인 안전보험과 어업인 안전보험으로 구성되어, 농협 손해보험과 수협중앙회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며, 동법 제4조에 따라 50%의 국고보조가 지원됨

▶ 어업 분야 재해보험에 관한 해외 정책 및 법령 비교 분석(미국·일본)

- 미국은 양식산업이 수산물 자급자족과 수자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에 착안하고, 양식산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인정하여 연방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는「양식업 연구를 위한 국가 전략계획 2014-2019」을 수립·시행함
- 일본은 농작물재해공제 외에, 별도의 법률인 어업재해보상법을 통해, 어획공제, 양식물공제 등 어업분야의 재해보험(공제)을 운영하며, 어선 등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통해 재해공제제도를 운영함

Ⅲ. 기대효과

- 양식물 재해보험 외에 어재보험 및 어업인 안전보험의 활성화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어업 분야 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며, 전통적인 방식의 어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부상 등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양식물 재해보험 외에 어재보험이나 어업인 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어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안
 -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외에, 어획을 주로 하는 어업은 현행 법령상 재해보험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어업재해보상법에서 어획공제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4년 일정한 농작물을 중심으로 수입보장보험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의 수입보장보험 도입 및 시범사업 논의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양식물 재해보험 관리를 위한 법령의 체계화
 -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보험 재보험에 관한 업무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되어 이루어지고, 손해분석·평가 및 DB관리, 상품개발 연구 등에 대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영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에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관리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거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관리에 관한 근거를 수협중앙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명문의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어업 분야 재해보험을 다루는 재해보험법으로 별도 분리 필요성
- 풍수해보험법의 보험목적물 적용범위 확대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보험목적물에 건물 외에 농업용·임업용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되나 어업용 생산시설은 제외되며, 어업용 생산시설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나 최근 기술개발을 통해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물에서도 양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어업용 시설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음

▶ 주제어 : 농어업재해보험법, 양식물 재해보험, 기후변화, 적응, 정책보험, 재보험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e and the need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 Unprecedented weather conditions caused by climate change such as high/low temperature, floods, draughts, hurricanes have been increasing
 - Unlike other sectors such as the information and technology sector, the agricultural sector is immediately effected by climate change whereby adaptability to such change is directly linked to its survival
 - Primary industries such as the fishery are more adaptation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than adaptation of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wher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s important and efficient adaptation in the fishery sector to climate change Has become a major policy issue

- ▶ **The importance of policy insurance for minimizing losses due to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cean**
 - Article 9 of the Paris Convention introduces a separate clause on the loss and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limate insurance as a risk distribution means.

- SDG presented the sustainable marine utilization as a detailed goal.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protection of fishing resources, and so on.
 - Recently, a variety of policy insurance has been utilized to improve adaptive capacity for climate change in the fisheries sector and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 on insurance for disaster insurance in the field of fisherie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policy insurance for efficient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to fisheries.

II. Major Content

- ▶ The aquaculture insurance scheme was launched in 2008 as a policy insurance scheme that provides substantial compensation under the Agricultural Employment Insurance Act.
 - The Fisheries and Marine Accident Insurance Act categorizes the types of disaster insurance as crops, forest products, livestock, and aquaculture, and aquaculture insurance is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Insurance objectives, coverage, insurance diseases, etc., shall be specifically determined by the subordinate statute of the Fisheries Accident Insurance Act.
- ▶ Agriculture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law, mainly deals with crop injury insurance and aquaculture, but it is mainly composed of crop injury insurance.

- Agriculture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law categorizes the types of disaster insurance as crops, forest products, livestock, and aquaculture, and aquaculture insurance is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Insurance objectives, coverage, insurance diseases, etc., shall be specifically determined by the subordinate statute of the Fisheries disaster Insurance law.
- Agriculture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law mainly deals with crop injury insurance and aquaculture, but it is mainly composed of crop injury insurance.
 - The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insurance business such as damage assessment and database construction do not apply to aquaculture accidents insurance. Therefor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aquaculture disaster insurance is limited.
- Agriculture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law is the main policy insurance for small fishing vessels and fishing vessels. Government subsidies are provided for small fishing vessels and fishermen accident insurance premiums.
 - It is expected that the insurance for the fishermen will be the insurance fo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the fishermen as insurance against injuries, diseases, disabilities and deaths caused by the fishery work.
-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aquaculture as a major means of aquaculture and resource recovery, and NOAA develops and implements national strategic plans for aquaculture research.

- Japan operates a disaster relief system such as fishery deduction and aquaculture deduction through the Fisheries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has a disaster compensation law for fishing boats and the like.

III. Expected Effects

- Activation of fishery accident insurance and fishermen safety insurance
 -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enhancement of adaptation capacity for climate change, various policy insurance such as fishermen's accident insurance and fishermen's safety insurance should be utilized in addition to aquaculture insurance.
-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fishery income guarantee insurance
 - According to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Insurance Act, fishing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accident insurance.
 - Japan is operating a deduction system that can guarantee certain income through the Fishery Accident Compensation Law. In Korea, income guarantee insurance is being piloted for specific crops from 2014 as well. Meanwhil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s begun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income guarantee insurance for fishermen from 2016.
- Necessity of Systematic Management of Aquaculture Insurance under Agriculture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law

- The current Agriculture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law has been supplemented by farmer 's accident insurance. Therefore, the reinsurance business is also entrusted to the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and Finance Corporation, and the damage analysis, damage assessment, database accumulation and management of aquaculture accidents insurance, and development of insurance products are excluded from this Act.

▶ **Key Words** : Agriculture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law, aquacultural disaster insurance, natural disaster, climate change, adapatation, policy insurance, reinsurance

목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I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3
Abstract	9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선행연구와의 연계 및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2
1. 연구의 대상	22
2. 연구의 범위	25

제2장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험활용의 필요성 / 27

제1절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의 주요 내용	29
1.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및 적응정책의 주류화	29
2.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개념의 도입 및 위험관리 회피 수단으로서의 보험의 역할	32
제2절 해양·수산 분야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실현 과제	35

제3장 기후변화 대응에 입각한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현행법령의 주요 내용 및 체계 / 37

제1절 어업 분야 관련 재해보험의 소관법령체계	39
1. 어업분야 재해보험의 종류	39
2. 각 재해보험에 대한 소관법령의 개요	40

목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I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2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농어업재해보험법	42
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운영현황	42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주요 내용	43
제3절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50
1. 어선원재해보험의 운영현황 및 개선논의	50
2.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기본체계 및 주요 내용	54
제4절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57

제4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분야 재해보험에 관한 미국일본의 정책 및 법제 비교 / 59

제1절 미 국	61
1. 양식업 연구를 위한 국가전략계획 2014-2019과 재정지원정책	61
제2절 일 본	64
1. 어업재해보상법	64
2. 어선손해등 보상법	66

제5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과제 도출 / 69

제1절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어업인의 수입보장보험 및 안전보장보험의 활성화	71
제2절 어업용 생산시설물에 대한 풍수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73
제3절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관리의 체계화	76

제6장 결 론 / 79

참고문헌	83
------------	----

부 록	89
-----------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 등 인간의 활동을 원인으로 인해 시작된 기후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PCC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 평균 해수온도 상승과 해수면 변화 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심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지구적 차원에서 수산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 연구의 일환으로 18개 조위관측소에서 장기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해수면 변동률을 산정하여 2009년부터 매년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해양관측망의 해수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여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2017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률은 2013년 IPCC가 발표한 전 세계 평균값(2.0mm/yr)보다 다소 높으며, 제주, 포항 등 지역별로 상승률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¹⁾ 이러한 해수면 상승과 해수온 변화는 연근해 어로어업에 영향을 주는 것에

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 전년보다 다소 빨라져- 국립해양조사원, 해수면 상승률 산정 및 상승 원인 일부 규명 -”, 2016.12.21. 1-2면.

그치지 않고, 양식이 적절한 지역의 변화나 해수온 변화에 따른 어종 관련 질병 확산 등 양식어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법제정비는 농업이나 산림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²⁾ 또한 해양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육상에서는 산림이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체계화되어 있으나 해양은 온실가스의 주요 저장소라고 알려져 있는 반면, 우리 바다가 온실가스 동태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³⁾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2001년에 시작되어 일찍 자리잡은 반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 도입되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식업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⁴⁾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외에, 연근해 어업을 영위하는 어선이나 어선원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보상보험이나 어업인이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안전보험 역시 어업분야의 중요한 정책보험 중 하나이다. 어업이나 양식업 분야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만큼, 어업·양식업 부문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 활용을 위한 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선행연구와의 연계 및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6년 농어업분야의 재해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법제연구⁵⁾의 후속 연구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분야의 재해보험에 관한 법제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김봉태, 이상건, 정명생,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의 특성 분석”, 2014. 수산경영연구, 제45권 3호, 2014. 72면.

3) 육근형, “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저감부문 이슈와 대응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안분석, 2016. 29면.

4) 보험연구원, 김동겸 선임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19):정책성 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3. 4.1. 11쪽.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I) - 농작물재해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6.

2016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도입된 정책보험으로서, 어업이나 축산업, 임업 분야의 재해보험에 비해 재해보험의 규모나 운영경험에 있어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사과, 배, 감귤 등 일부 농작물을 중심으로 수입보장보험상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및 국가재보험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관(농촌정책보험금융원)을 설립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법 외에 풍수해보험법을 통해 비닐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적용을 받는 등, 농작물 관련하여 재해보험을 다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어업 분야의 재해보험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양식의 경우 “기르는 어업”으로서⁶⁾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재해보험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반면, 전통적 형태의 어업의 경우 연근해에서 다양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농업이나 기르는 어업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태의 재해보험 체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연근해 어업을 주로 하는 어선이나 어선원의 경우 어업활동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행위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재해보상이나 안전 확보가 정책보험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업을 영위한다는 목적을 전제로, 각 어업활동에 대한 정책보험적 보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로 한다. 특히 어업 중 최신 기술이 적용되고 비중도 가장 큰 양식업을 중심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정하고 있는 농어업 재해보험법을 중심으로, 어선 및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검토하고, 이 중 농작물 재해보험과의 연계하여 풍수해보험법 등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어업 중에서도 양식업이 발달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양식업 관련 재해보험 운영현황 및 법제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어업인의 안전·소

6) 수산업법 제2조(정의) 제5호, “기르는 어업”이란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

특보장·혁신기술 지원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와 함께, 파리협약상 기후변화 적응과 손실과 피해의 개요를 분석하고, 이를 해양·어업 분야의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여 필요한 법제개선과제 도출을 시도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2016년에 수행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I) - 농작물재해보험을 중심으로”의 후속연구로서, 어업분야의 주요 정책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풍수해보험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반면 어업은 좀더 광범위하다. 어업은 전통적 형태의 연근해에서의 포획·수집 외에 원양에서 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포획·수집이 이루어지는 한편, 유통이나 가공과 연계된 형태의 영업형태도 수산업의 영역에 함께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특정 어류를 기르고 가공해야 하는 양식업도 광의의 어업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방식의 연근해 포획 외에 염업과 기타 가공 및 양식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의 어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수산업법」 제2조 정의는 수산업,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기르는 어업, 양식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⁷⁾

7)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르는 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
6. 생략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이하 생략)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법 및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수산업, 어업, 양식업을 정의하고 있는 바, 어업의 경우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즉 연근해에서 이루어지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와 양식 및 염업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어획물 운반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은 어업과 별도로 정의하며 이들 운반·가공·유통과 구분되며 수산업에 포함되는 형태의 영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광의의 어업이라고 할 경우, 연근해 어업, 원양어업, 양식업(기르는 어업) 외에 수산업 차원에서 어획물 운반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에서 검토하는 연구의 대상은 연근해 어업, 즉 연근해에서 일정 규모의 선박 및 선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하는 작업이나, 수산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르는 어업 과정, 즉 양식과정이나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 등에 대한 정책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 등)에 대하여 주로 검토한다.

2. 연구의 범위

이상에 따르면 해양을 중심으로 연근해나 원양, 영업 형태 여부에 따라, 어업 자체가 수산업(유통, 가공업 포함), 양식업 등을 어업, 수산업, 양식업(기르는 어업)의 영역으로 각각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온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기후의 변화 등을 근거로, 연근해 어업 및 양식업 등에서 발생하는 급격하는 변화에 대하여 어업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법제개선분야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특히 기

후변화 상황에서도 어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법제로서 보험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현행 법령 및 해외 법제를 비교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비교법제분석, 현행 법령 및 연구문헌 분석 등 문헌 연구 외에,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정부 정책 담당자 및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 및 농어업 기후변화 적응 분야 관련 연구진의 연구협력에 기반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농어업재해보험 운영현황 및 농업인 설문조사 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 과와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진과의 워크숍, 전문가회의를 통해 정책 실무 및 실태조사의 결과에 기반하여 법령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장의 경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외에, 선행연구와의 연계성을 함께 검토하는 한편,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업/수산업/양식업 등에 대하여 명확히 확정짓는 한편, 제2장에서는 파리협약상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포괄적 위험평가 및 그에 따른 관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어업 분야 재해보험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제4장에서는 각 법령별 쟁점과 해외 법령의 주요 내용과 비교·검토하는 한편, 이를 통해 도출되는 법령개정방안과 주요 시사점에서는 제5장에서 결론에 같음하여 다루기로 한다.

제2장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험활용의 필요성

제1절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의
주요 내용

제2절 해양수산 분야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실현 과제

제2장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험활용의 필요성

제1절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의 주요 내용

1.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및 적응정책의 분류

(1)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적응 개념 및 목표

파리협정은 기존의 기후변화의 주요 패러다임 축이라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저감(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에 더하여, 제8조(Article 8)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줄이는 것이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기조가 될 것임을 새롭게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에 기후변화 적응의 일부로 논의되었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파리협정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포함된 것은 2010년 칸쿤합의(Cancun Agreement)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 회복능력의 제고 등에 대한 쟁점을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수준으로 논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리협정을 근간으로 하는 신기후체제에서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응이나 손실과 피해를 논의하는 데 합의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후체제에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을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당사국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은 적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는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적응, 재정, 기술, 기후변화 대응역량의 제고 등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⁸⁾ 특히 개발도상국 그룹은 협상과정에서 새로운 기후체제 참여의 조건으로 기후변화 대응에서 감축과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적응문제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요구하였고, 이와 함께 손실과 피해 문제를 적응과 별개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던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⁹⁾

이와 같이 파리협정문에 적응과 손실과 피해를 제7조,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함에 있어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⁰⁾ 협정의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전 지구적 대응 강화를 그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 기후 회복력의 강화 등을 새로운 형태의 대응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제8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손실과 피해 개념의 도입과 함께 파리협정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한 용어가 있다. 바로 파리협정의 목적을 언급한 제2조에서는 목적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회복탄력성이 그것이다. 파리협정에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 파리협정 제7조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 지구적 목표로, ‘적응역량향상’, ‘회복탄력성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감소’를 제시하였고,¹¹⁾ 이들 목표는 본 파리협정이 제시하고 있는 온도 목표¹²⁾, 즉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기후변화 적응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이기도 하다.

8) 이승준, 안병옥,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관한 대응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21면.

9) 이승준, 안병옥, 위의 보고서 22면.

10) 이승준, 안병옥, 위의 보고서, 22면.

11) 이승준, 안병옥, 위의 보고서, 23면.

12) 파리협정의 제2조에서는 본 협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지구평균온도 증가를 산업화 수준 대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함을 언급하였다.

협정의 제7조 2항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지방, 지역, 국가, 국제 수준에서 모두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 도전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의 방향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는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13번은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을 취하는 것을 상위목표로 설정하였다. 세부목표는 상당 부분 기후변화 적응을 언급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³⁾

(2) 적응정책의 주류화 필요성

기후변화 적응만을 위한 독립적인 개별정책은 실제로 기후변화 적응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은 생태계를 비롯하여 사회경제계의 여러 부분, 여러 지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과 각 부문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준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설계, 모니터링 및 평가와 피드백 등의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과 위협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적응의 주류화(Mainstreaming)라고 하며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¹⁴⁾ 즉 적응의 주류화는 장·단기 국가정책, 국가 및 지역 계획과정, 예산결정과정 등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위협과 영향 등을 고려함으로써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⁵⁾

파리협정 제7조 5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이들 원칙의 궁극적인 목적이 “적응을 관련 사회경제 및 환경 정책과 행동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포괄적인 원칙이 협정에 명문 규정으로 도입된 것은, 그동안 파리

13) 이승준, 안병옥, 위의 보고서, 24면.

14) 박창석, 김동현,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주요 전략과 과제”, Special Issue 제77호(2012.9.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면.

15) 이승준, 안병옥, 위의 보고서, 40면.

협정 입안을 위한 협상회의에서 적응의 주류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가 최종적으로 파리협정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궁극적 목적의 내용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¹⁶⁾

2.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개념의 도입 및 위험관리 회피 수단으로서의 보험의 역할

(1) 파리협정상 손실과 피해의 개념 도입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손실과 피해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칸쿠폰합의에서부터였으며, 파리협정에서는 손실과 피해를 기후변화 적응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후변화 대응원칙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칸쿠폰합의에서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극한 기상현상(Extreme Weather Events) 및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Slow Onset Events)과 연관된 영향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로 정의하고,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에는 해수면 상승(sea level rise), 온도상승(increasing temperature),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 빙하 후퇴 및 관련 영향(glacier retreat and related impacts), 염류화(salinization), 토지 및 숲 황폐화(land and forest degradation), 생물다양성 손실(loss of biodiversity), 사막화(desertification) 등이 포함된다.¹⁷⁾

그러나 파리협정문 내에서 ‘손실(Loss)’과 ‘피해(Damage)’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으며, 통상 민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로서의 ‘손실’과 ‘피해’의 법적 용어정 의가 협정문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¹⁸⁾ 다만 기후변 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의 관계에 대해서, 제19차 당사국총회는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는 적응에

16) 이승준, 안병옥, 위의 보고서, 24면

17) UNFCCC(2011),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16th Session, Held in Cancun from 29 November to 10 December 2010, FCCC/CP/2010/7/Add.1.

18) 법률용어상 피해(damage)는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의미하고, 위법행위가 아닌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실(loss)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의해 경감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¹⁹⁾

제8조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당사국들의 의무를 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기후변화 적응과 별도의 조문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기후변화 적응체계와 별도로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⁰⁾ 즉, 종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으로 양분하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²¹⁾

파리협정 제8조는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당사국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손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당사국간에 이 문제에 대한 이해, 행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8개 분야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이해, 행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²²⁾

-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s)
- 긴급상황 대비(Emergency Preparedness)
-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Slow Onset Events)
-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인 손실과 피해를 포함하는 현상(Events That May Involve Irreversible and Permanent Loss and Damage)
- 포괄적 위험평가 및 관리(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 위험보험기구(Risk Insurance Facilities), 기후위험분산(Climate Risk Pooling), 타 보험 해결책(Other Insurance Solutions)
- 비경제적 손실(Non-Economic Losses)

19) UNFCCC(2014),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19th Session, Held in Warsaw from 11 to 23 November 2013, FCCC/CP/2013/10/Add.1.; 이승준, 안병욱, 위의 보고서, 51면.

20) 이승준, 안병욱, 위의 보고서, 52면.

21) 같은 의견이 이승준, 안병욱, 위의 보고서, 52면에 그래프의 형태로 함께 정리되어 있다.

22) 이승준, 안병욱, 위의 보고서, 54면.

- 공동체, 생계, 생태계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of Communities, Livelihoods and Ecosystems)

(2)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포괄적 관리 및 보험을 활용한 위험 분산

보험은 전통적인 형태의 위험 분산 및 관리를 위한 법적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인 기후위험보험(Climate Risk Insurance)은 그 자체로 기후변화 현상을 예방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위험을 줄이는 행동을 유도하거나 위험이나 잠재적인 손실과 피해를 평가함으로써 포괄적 기후위험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위험보험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예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재산 및 생계 손실에 대한 보호, 재난 이후의 신뢰할 만한 구호, 예방을 위한 유인책 마련, 날씨와 연관되는 공공 및 민간 투자에 대한 확실성 부여, 재난 관련 빈곤 완화 및 경제개발 촉진 등을 들 수 있다.²³⁾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들의 포괄적 관리(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에 대해서는 파리협정과 당사국 총회 결정문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다.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파리협정 제8조 제항에서는 당사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이해와 행동,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 4항에서 이들 이해, 행동, 지원의 강화를 위한 분야로 ‘포괄적 위험 평가 및 관리’와 더불어 ‘위험보험기구, 기후위험분산 및 기타 보험 관련 해결책’을 제시하였다.²⁴⁾

전통적 형태의 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기상현상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 및 사망 확률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없다는 점, 보험이 언제나 가장 비용대비 효과적인 수단이라거나 어떤 재해에나 감당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극한기상현상의 주기와 세기 증가에 따라 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

23) 이승준, 안병옥, 위의 보고서, 59면

24) 이승준, 안병옥, 위의 보고서, 59면.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²⁵⁾ 이에 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평가 및 위험경감, 사전계획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전통적 형태의 보험상품이나 정책보험과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줄이는 한편 위험평가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해양 · 수산 분야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실현 과제

지속가능발전은 1980년 국제보전연맹(ESSCD) 회의에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용어로 처음 등장하였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²⁶⁾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리우선언문과 ‘Agenda 21’을 수립하였고, 2015년 9월, 세계 160여 개국 정상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였다.²⁷⁾

SDGs는 사회균형발전, 경제성장, 환경보호의 3대 분야를 포괄하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다.²⁸⁾ SDGs의 17가지 목표 중 제 14목표는 ‘해양과 수산자원보존

25) 이승준, 안병옥, 위의 보고서, 60면.

26)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http://ncsd.go.kr/app/sub02/11.do>, 2017. 9. 11. 방문.

27) 강버들 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를 위한 수산교육 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9(2), 2017. 454쪽.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며, 제 14 목표는 7개 의 세부목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²⁹⁾ 이 7개의 세부목표는 모두 해양의 식량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수산자원의 관리방안과 해양생태계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025년까지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
- 2020년까지 해양생태계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
-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 2020년까지 효율적 어획규제, 남획 및 IUU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파괴적 어업방지, 과학기반 관리 이행
- 2020년까지 연안·해양 10%의 보호구역 설정
-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유발 어업, IUU어업의 보조금 금지
-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이용을 통한 도서국가 및 최빈국 혜택증대

본 연구는 SDGs의 14번째 목표인 ‘해양과 수산자원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보험, 특히 재해보험의 활용에 관한 법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28) 홍은경, “SDG 최종 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환경보호”, 국제개발협력, 2016..7, 20면.

29) 장창익,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해양수산부문의 추진과제”, SEA&(2015년 10월호), (사)한국해양산업협회, http://www.webzine-sean.kr/html/main/view.php?idx=149&keyword=&keyfield=&s_category= 2017. 10. 18. 방문; 홍은경, 위의 논문, 36면.

제3장

기후변화 대응에 입각한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현행법령의 주요 내용 및 체계

제1절 어업 분야 관련 재해보험의 소관법령체계

제2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절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제4절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제3장

기후변화 대응에 입각한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현행법령의 주요 내용 및 체계

제1절 어업 분야 관련 재해보험의 소관법령체계

1. 어업분야 재해보험의 종류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수산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인 어획·채취하는 방식의 어업 외에, 양식업과 염업을 포함하여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때 어업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형태의 재해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통상 어업 분야의 재해보험이라고 하면,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³⁰⁾ 따라서 대표적인 어업분야의 재해보험 관련 법령으로 어업재해보험법이 될 것이다.

양식물 재해보험이 양식의 결과물인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 발생에 대하여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전통적인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소규모 어선 및 어선원에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정책보험을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산재보험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있다. 따라서 어업분야의 재해보험의 종류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0) 실제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사업시행지침의 경우에도, “2017년도 어업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라고 제목을 표시하고, 동 사업지침의 해석기관을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명시하고 있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법)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어선원재해보험법)
- 어업인안전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법)

2. 각 재해보험에 대한 소관법령의 개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는 재해보험의 종류로,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정하고, 제5조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을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로 정하고 있다. 보험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³¹⁾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³²⁾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홍보 등을 수행함으로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동 재해보험은 임의보험 가입 여부는 양식사업자 개인이 결정한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이나 어선원이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보험의 내용으로 한다.³³⁾ 어선원재해보험보험의 경우, 임의보험 형태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나 어업인 안전보험과 달리,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구분된다. 4톤 이상의 어선(원양어선 제외)의 경우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3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메기, 향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출시- 31일(수)부터 주산지인 충남 및 전북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2017. 5. 29. 2면.

33)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중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소개를 활용하여 정리함. https://suhyup.co.kr/service/etcinfo_1202.jsp, 2017. 9. 7. 방문.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관련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다.³⁴⁾

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정책보험으로서, 그동안 산재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던 농어업인들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의 보험이다.³⁵⁾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통해 어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이 도입되었고, 이 보험은 어업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모도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⁶⁾ 동 법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하여³⁷⁾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의 수산인 안전공제에 대한 공제료의 50%를 지원한다.³⁸⁾

개별 재해보험에 대한 소관법령의 세부 내용은 이하에서 분석·정리하기로 한다.

34)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18조;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중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소개.

https://suhyup.co.kr/service/etcinfo_1202.jsp, 2017. 9. 7. 방문.

35) 어업 in 수산, “수협, 어업인 재해 대비 ‘어업인안전보험’ 나온다. - 이달 7일 출시, 어업인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상품-”, 2016. 01. 14.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1>, 2017. 9. 7 방문.

36)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조(목적),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정부 24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함,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20006>, 2017. 9. 7. 방문.

37)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정의)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38)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에 근거하여, 수산인 안전공제의 주계약에 대한 공제료 50%를 지원함.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20006>, 2017. 9. 7. 방문.

제2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농어업재해보험법

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운영현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액의 10~15%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을 보완하여 피해어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모험으로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³⁹⁾

양식어가의 보험가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보험가입 증가의 원인으로 지난 몇 년간의 대규모 재해, 예를 들어 2012년에는 태풍, 2013년 적조 등,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으로 인해, 어업인의 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대된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보험가입 홍보 및 보험료 사전 납부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들고 있다.⁴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일부(50~80%)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10~25% 정도 부담하고 있으므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비용보조규모도 268억원에 이른다.⁴¹⁾

3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1→24개 품목으로 확대”, 2016. 4. 19. 1면.

40) 해양수산부, 위의 보도자료, 2면.

41)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201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중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표 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비용보조 재정 투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비용보조	7,011	7,371	14,484	19,174	22,200	26,81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주요 내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 제4조는 재해보험의 종류를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나누고, 농작물, 임산물, 가축 관련 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장하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하며, 소관부처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이다.⁴²⁾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목적물, 보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고 있으며, 보험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구체적인 보험목적물 등에 대하여는 고시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42) 후술하는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과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역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가 담당한다.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양식수산물 외에 양식시설물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보험목적물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해양수산부 고시⁴³⁾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재해보험의 종류	보험목적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송어 및 강도다리
	위 수산물의 양식시설(부대시설 포함)

고시에서 정하는 12개 품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본사업의 보험목적물이며, 그 외에 주산지를 중심으로 김, 우렁쟁이, 뱀장어, 미역, 홍합, 다시마, 가리비, 송어,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등을 시범사업 방식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고 있다.⁴⁴⁾ 그리고 최근 해양수산부는 2017년 5월 메기, 향어 등에 대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 목적물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동법 제6조는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정부가 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⁴⁵⁾ 시행령 제8조, 별표 1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43) 고시 제2016-154호

44)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1→24개 품목으로 확대”, 2016. 4. 19. 배포

45)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표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재해보험의 종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⁴⁶⁾

<표 3> 양식수산물 보험목적물에 따른 보험대상 재해⁴⁷⁾

보험대상 품목명	피해의 종류				시설물 피해
	주계약	특약			특약
		수산질병	전기적장치	기타	양식시설물
넙치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u>한파</u> , <u>저수온</u>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전복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u>이상수온</u>	주계약 보상재해	-	<u>이상수질</u>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해상 가두리 어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주계약 보상재해 (취치 제외)	-	<u>고수온</u> , <u>저수온</u> , <u>이상수질</u>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	-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김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주계약 보장재해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46)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60호, 2016.11.21.]

47) 해양수산부·수협, 2016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7면.

보험대상 품목명	피해의 종류				시설물 피해
	주계약	특약			특약
		수산질병	전기적장치	기타	양식시설물
멍게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	-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미역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	-	-	조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조수
뱀장어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u>고수온</u>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강도다리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u>한파</u> , <u>저수온</u>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홍합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	-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다시마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	-	-	조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조수
송어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u>가물</u>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u>고수온</u>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육상수조식 돌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u>한파</u> , <u>저수온</u>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u>고수온</u>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가리비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	-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보험대상 품목명	피해의 종류				시설물 피해
	주계약	특약			특약
		수산질병	전기적장치	기타	양식시설물
돛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	-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육상수조식 전복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u>한파</u> , <u>저수온</u>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u>고수온</u>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미더덕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및 이상조류	-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오만둥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및 이상조류	-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제7조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제8조에서는 재해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수협이나 산립조합중앙회, 보험회사 등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사업자는 수협이 유일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합하여 다루고 있으나, 법령을 살펴보면 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해보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험목적물, 보상재해의 범위, 보험사업자, 재정지원, 재해보험에 대한 재보험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조문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으나, 손해평가나 재보험사업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규율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험 사업의 중요한 쟁점인 손해평가 및 관리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향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활용이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별 내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역할 개입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조문제목	농림축산 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3조 심의회	O	O
제2장 재해보험사업	O	O
제4조 재해보험의 종류 등	O	O
제5조 보험목적물	O	O
제6조 보상의 범위 등	O	O
제7조 보험가입자	O	O
제8조 보험사업자	O	O
제9조 보험요율의 산정	O	O
제10조 보험모집	O	O
제11조의2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O	X
제11조의3 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O	X
제11조의4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O	X
제11조의5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O	X
제11조의6 손해평가사의 감독	O	X
제19조 재정지원	O	O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제20조 재보험사업	O	O

조문제목	농림축산 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재해 보험)
제21조 기금의 설치	O	O
제22조 기금의 조성	O	O
제23조 기금의 용도	O	O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 용원에 위탁할 수 있다	O	O
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O	O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제25조의2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O	X
제26조 통계의 수집·관리 등	O	O
제27조 시범사업	O	O
제28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O	O
제28조의2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O	O
제29조 보고 등	O	O
제29조의2 청문	O	X

제3절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1. 어선원재해보험의 운영현황 및 개선논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어선원 및 어선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현재 소규모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한 주요 정책보험 중 하나이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정책보험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선상 근로자의 재해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톤수 이상의 어선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어선원 보험은 타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어선원에 대하여 산재와 같은 재해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동 법의 사업대상자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으로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에 대하여 국고보조가 이루어진다.⁴⁸⁾ 이 때 10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과 20톤 이상 어선 등에 대하여는 부가보험료에 한하여 국고보조가 된다.⁴⁹⁾ 또한 어선의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의 비율이 조정된다.

48) 어선원재해보험법 제4조.

49) 해양수산부·수협, “2017년 어선원 및 어선보험 사업안내”, 2면, www.bokjiro.go.kr, 2017. 9. 14. 방문.

<표 4> 2017년도 어선원재해보험의 국고보조 규모⁵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어선원 및 어선 보험에 대한 국고보조	77,523	94,016	112,650	105,663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절차적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 때의 절차는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어선원재해보험의 당연가입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제개선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어선원재해보험법이 도입될 당시 당연가입의무가 적용되는 어선은 5톤 이상의 어선이었으나, 2016년 4톤 이상의 어선으로 확대하여 4톤 이상의 어선은 어선원보험에 당연히 가입⁵²⁾하도록 하였고, 4톤 미만 어선의 경우 어선원보험은 임의가입형태로 유지되었다.

문제는 4톤 미만 어선의 경우 주로 연근해 근거리 조업을 함에 따라 사고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에 따라, 현재 4톤 미만의 영세한 소형어선은 어선원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어선이나 어선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해어선원의 보호가 미흡하고 어선조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어선어업의 경영불안이 계속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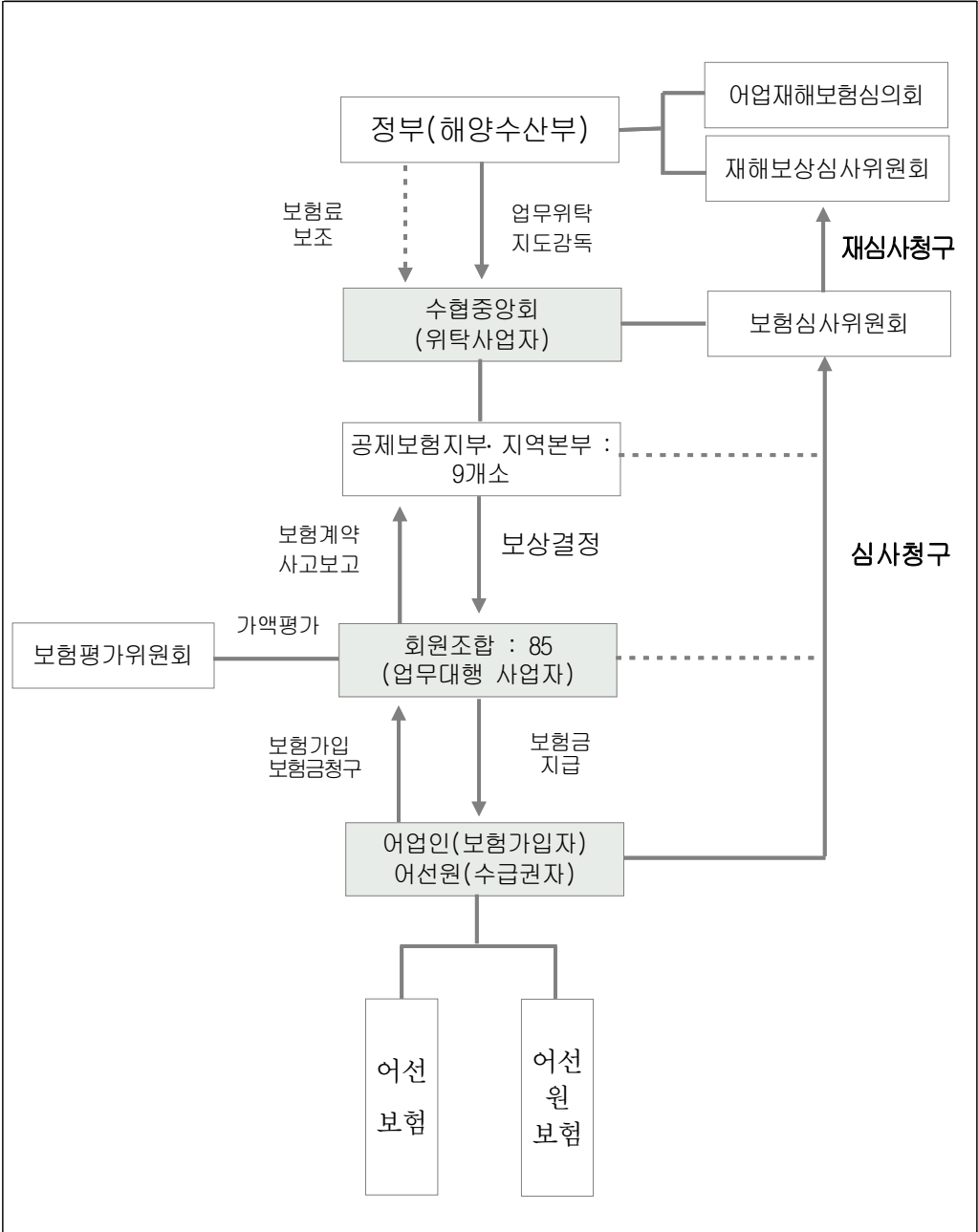
50) 해양수산부·수협, “2017년 어선원 및 어선보험 사업안내”, 1면, www.bokjiro.go.kr, 2017. 9. 14. 방문.

51) 해양수산부·수협, “2017년 어선원 및 어선보험 사업안내”, <붙임 4> www.bokjiro.go.kr, 2017. 9. 14. 방문.

52) 어선원재해보험법 제16조에 따라 보험가입의사표현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제44조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

53) 위의 내용은 해양수산부가 2017년 5월 24일에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적용범위를 3톤 미만으로 확대하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시, 첨부한 해양수산부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정리함.

<그림 1>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및 추진절차51)



실제로 2016년을 기준으로 어선원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42.1%, 4톤 이상 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률은 81.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 반하여,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인 9.0%에 불과하며, 4톤 미만의 어선에서 승선하여 사고가 발생한 선원수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⁵⁴⁾

현실적인 한계로 현재 4톤미만의 어선원에 대하여 임의가입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저조하고, 사고발생과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세·소형 어선원의 복지를 위하여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해양수산부가 제도개선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중인 2017년 5월 24일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어선원재해보험의 당연가입 적용대상을 현행 4톤 이상의 선박에서 3톤 이상의 선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연구를 마무리하는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선원재해보험법이 제정된 2004년을 기점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당시의 적용범위 기준을 2016년에 4톤 이상의 선박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2년의 기간이 소요된 만큼, 2016년에 개정된 내용을 2017년에 다시 3톤 이상의 선박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에는 당연가입에 따른 국고보조 부담이나 당연가입에 대한 어업인들의 비용적 부담 등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어선원재해보험이 본질적으로 어선원들의 산재보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어선원재해보험의 당연가입을 위한 적용범위가 확대될 필요는 분명히 있으며, 어선원재해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소관부처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시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54) 4톤미만 사고 선원수 : ('12) 193명 → ('13) 209 → ('14) 265 → ('15) 299 → ('16) 317

해양수산부, 규제영향분석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적용범위 확대)(2017.05.) 4면.

2.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기본체계 및 주요 내용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어선 및 어선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제1장과 제2장에서 총칙과 보험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한편, 제3장에서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제4장에서 어선재해보상보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제5장에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정하고, 제6장과 제7장에서 각각 보칙과 벌칙에 대하여 정하며, 총 5개장, 9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당히 규모가 있는 법령이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관련 보험상품은 수협에서 개발, 운영중이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⁵⁵⁾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선원재해보험법 제6조⁵⁶⁾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제6조에 따르면

55)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어선원등의 재해로 인하여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③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중앙회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6) 어선원재해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동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되나, 원양어선과 수산물 운송선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어57)선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4톤 이상의 어선(원양어선, 수산물운송선, 4톤 미만의 어선 등)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며,⁵⁸⁾ 당연가입대상이 되면 어선원재해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⁵⁹⁾하여, 보험관련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한다.⁶⁰⁾

4톤 미만 어선,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비존속)만 승선하는 경우, 관리선 지정 어선(단, 정치망관리선과 허가·신고어선은 제외), 내수면 어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선 등은 임의가입 대상이 된다.⁶¹⁾ 임의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을 신청하고 보험사업자인 수협회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각종 징수금에 관한 규정(보험료 미납시 연체금(법 제43조, 시행령 제30조)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법 제44조, 시행령 제31조 제2항), 체납처분(법 제36조), 보험관계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법 제71조 제1항) 등)이 적용된다.⁶²⁾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7)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4톤 미만의 어선. 다만, 4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4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
2.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5.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6.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58) 어선원재해보험법 제16조.

59) 어선원재해보험법 제18조.

60) 어선원재해보험법 제44조.

61)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어선을 의미함.

62) 수협 홈페이지의 정책보험 소개 중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https://suhyup.co.kr/service/etc/info_1201.jsp. 2017. 9. 7. 방문.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 즉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⁶³⁾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⁶⁴⁾ 그리고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⁶⁵⁾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2조 ~ 제3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의 인정기준이나 보험급여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에 따른다.⁶⁶⁾ 동법에 따르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제22조) 외에 제23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지급되며(제23조), 산재보험법의 적용에 따라 전원요양(제23조의4),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제23조의5), 재요양(제23조의6) 등도 적용되며, 그 외에 상병급여(제24조), 장해급여(제25조), 일시보상급여(제26조), 유족급여(제27조), 제28조(장례비), 제29조(행방불명급여), 제30조(소지품 유실급여) 등이 보험급여로서 인정된다.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경우,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제도보다 구체화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상의 주요 급여내용을 도입함으로써, 선원법상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향 논의에 대한 주요 참고쟁점이 되고 있다.

63)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제6호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64) 시행령 제20조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65) 어선원재해보험법 제68조(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①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이를 도와야 한다.

66)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21조 이하의 보험급여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의 여러 규정들이 준용됨.

(2)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원재해보험법 제4장은 어선재해보상보험에서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어업인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⁶⁷⁾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어선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 건조하거나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어업인으로서의 어선의 건조나 수리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어선재해보험을 통해 재해로 인한 어선 피해 발생시 건조나 수리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어선의 경우 보험료의 일부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지원한다.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목적물은 선체,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을 일괄하여 하나의 단위로 하며,⁶⁸⁾ 만기선령(목선 15년, 강선등 25년) 초과어선(단, 감정평가 등에 의한 가용년수 범위내에서는 가입가능), 감항능력 결여선박, 장기계류, 감선대상 등 상당기간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어선, 현저한 노후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 등의 경우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제한된다.⁶⁹⁾

제 4 절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2015년 12월에 제정되어, 2016년 1월에 시행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경우 농업인, 어업인의 4대보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보험으로 기대되고 있다.⁷⁰⁾ 동 법은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농어

67)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7호, "어선재해"란 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긴 사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8)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0조.

69) 수협 홈페이지의 정책보험 소개 중 어선재해보상보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https://suhyup.co.kr/service/etcinfo_1201.jsp. 2017. 9. 8. 방문.

70) 한겨레, "산재보상받듯 농어업인에게도 안전재해보험 필요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7023.html>(2017.10.16. 방문)

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안전보험으로서, 농어업 종사자 보호 및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⁷¹⁾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과 같이 농어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현재 50%의 국비 지원 외에,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⁷²⁾

최근 수협중앙회는 2016년 1월 어업인 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⁷³⁾ 새롭게 출시된 어업인안전보험은 기존 수산인안전공제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천일염 제조 종사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급여 500만원, 재활급여 최대 500만원, 행방불명급여 최대1000만원, 장례비 1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제외됐던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발생된 질병도 새롭게 추가되면서 보장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또한 기존의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지급하던 입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 보장급여 항목은 계속 유지되었다.

지원대상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 근로자와 그 배우자이며, 이 때 겸업 근로자도 포함된다.⁷⁴⁾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 어업자, 양식·양어 종사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⁷⁵⁾ 동 보험은 농어업인의 산재보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보험이기는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양식물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임의보험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71)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조.

72) 최근 농협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상품을 출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국비 및 지자체 지원비율을 70% 전후로 높이고,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시행지침을 제시하였다. “2017년도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안)”.

73) 파이낸셜 뉴스, “어업사고 피해보장 안전보험 출시”, 2016. 1. 7.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601071719396567>(2017. 10. 16. 방문)

74)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 제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즉 이 때의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5) 정부24,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20006>(2017. 10. 19. 방문)

제4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분야 재해보험에 관한 미국·일본의 정책 및 법제 비교

제1절 미 국

제2절 일 본

제4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분야 재해보험에 관한 미국·일본의 정책 및 법제 비교

제1절 미 국

1. 양식업 연구를 위한 국가전략계획 2014-2019과 재정지원정책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양식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양식수산물 생산금액이 연평균 7.2%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식수산물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역별로 아시아 국가의 생산금액 비중이 전체의 77.2%를 차지한다.⁷⁶⁾

<표 5> 세계 양식수산물의 생산금액 추이⁷⁷⁾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1984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2000년 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양식업	11.1	26.7	51.1	125.7	166.0	225.1	7.2

76)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2017.5.), 6면.

7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의 보고서, 6면의 도표 재인용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 양식수산업 투자가 확대되어, 양식수산물 생산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식수산물 생산금액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식수산물 생산금액의 증가속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6> 대륙별 양식수산물의 생산금액 추이⁷⁸⁾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1984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Africa	0.0	0.2	1.0	2.7	3.2	3.4	3.6	3.7
America	0.8	1.5	3.9	10.2	13.7	13.3	16.2	19.0
Asia	8.4	20.9	41.1	101.4	108.0	116.7	124.0	128.2
Europe	1.4	4.0	4.6	10.3	11.2	10.8	13.1	13.6
Oceania	0.0	0.1	0.5	1.2	1.3	1.5	1.4	1.5
전 세계	11.1	26.7	51.1	125.7	137.4	145.6	158.5	166.0

한편 미국은 세계 5위의 수산물 생산 국가인 동시에 연간 2~4백만 톤을 소비하는 국가로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거대시장이다.⁷⁹⁾ 2012년 기준 연간 약 6.5kg의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의 수산물 생산(양식수산물 포함)은 미국 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한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입을 통해 충당한다.⁸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양식수산업이 식량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식량재생산인 동시에, 첨단산업으로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술투자나 재정지원 등이 늘어나고 있다.

78)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의 보고서, 6면의 도표 재인용

79)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3차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013), 67면.

80)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의 보고서, 67면.

최근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는 「양식업 연구를 위한 국가전략계획 2014-2019⁸¹⁾」과 해양양식업 전략계획(2016-2020) 등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식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힘입어 북미 지역의 양식 생산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연방 농작물 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의 위험관리를 관할하는 농무부 산하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역시 해양양식수산물 외에, 민물 양식수산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다.⁸²⁾

미국의 양식업 국가전략계획은 친환경, 경제성, 사회성, 국제관계의 4개 관점에 대해 각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면양식’, ‘상업적 해면양식 개발과 어장의 회복’, ‘양식산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 ‘국제적 협력증대’의 4대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⁸³⁾

미국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NOAA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지원의 형태는 NOAA의 양식산업 보조금 선발프로그램(NOAA Competitive Grants Program for Aquaculture)과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선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SeaGrant 연구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SBIR: NOA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Saltonstall-Kennedy 재정지원 프로그램, 해양수산 선도 프로그램(MARFIN: Marine Fisheries Initiative Program)이 있으며, 재정지원프로그램으로는 어업재정지원 프로그램(NOAA Fisheries Finance Program)이 있다.⁸⁴⁾

81) National Strategic Plan for Federal Aquaculture Research(2014-2019)

82) Risk Management Agency, “The feasibility of crop insurance for freshwater aquaculture”, USDA, 2011. 09. 38면 이하.

83)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의 보고서, 67면.

84)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의 보고서, 70면.

제2절 일 본

1. 어업재해보상법

(1) 어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일본의 어업재해보상제도는 중소어업자가 어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상현상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의해 받는 손실을 상호 보전함으로써, 어업재생산의 저해를 방지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어업재해보상법 제1조)⁸⁵⁾

전국 행정구역별 어협(漁協) 및 어업연합(漁連)을 조합원으로 설립된 어업공제조합은 중소어업자의 상호구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어업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⁸⁶⁾ 또한 어업공제조합을 회원으로 설립된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는 공제책임의 일부를 분담(재공제)하고 있다.⁸⁷⁾ 또한 국가는 중소어업자에 대하여 공제부금(共濟賦金)을 일부 보조하고 이와 함께 특별회계를 통해 재공제 책임의 일부를 분담(보험)하고 있다.⁸⁸⁾

<표 7> 어업공제사업의 종류⁸⁹⁾

종류	사업의 성격
어획(漁獲)공제	어선어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어획량이 감소 등으로 인해 어획금액이 줄어든 경우 손실을 보상한다.
양식(養殖)공제	어류 양식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양식수산동식물의 사망, 유실 등에 의

85) 일본의 어업재해보상법의 내용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일본 수산관련 법규집」(2009) 229면 이하의 어업재해보상법의 국문 번역을 참고하였으며, 2017년 현행 일본 어업재해보상법의 해당 조문의 개정여부를 확인한 후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번역·정리하였다.

86) 일본 어업재해보상법 제2조.

87) 일본 어업재해보상법 제10조.

88) 일본 어업재해보상법 제5장 정부의 어업공제보험사업(제147조의3 ~ 제194조)

89) 일본 어업재해보상법 제77조, 제78조를 참고하여 저자가 표로 정리함

종류	사업의 성격
	한 손해를 보상한다.
특정양식공제	어패류, 해조류 양식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특정 양식업에 생산금액이 감소하고, 더하여 생산수량이 일정량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한다.
어업시설공제	공용(供用)인 양식시설 또는 어업도구(어망 등)의 손괴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2) 어업공제 외에 어업수입안정대책

계획적 자원관리 및 어장개선에 참여하는 어업자를 대상으로, 어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실시하는 어업공제의 경영안정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수산자원의 관리회복을 도모하며 어업자의 수입의 안정 등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적립플러스 제도 및 공제부금의 추가보조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적립플러스 제도의 경우 어업자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 이를 국가와 어업자가 각출한 적립금에 의해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어획금액, 생산금액의 감소에 따른 보전(어획, 특정 양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양식물의 경우 적용된다.⁹⁰⁾ 출하한 양식물의 출하가격의 하락을 출하중량에 따라 보전(양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어업자 1 : 국가 3의 비율로 수입을 보전한다.

공제부금 추가보조제도의 경우, 어업자가 부담하는 순공제부금에서 어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규칙의 국고보조를 제외한 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자원관리계획 또는 어장개선계획에의 참여와 어업공제에의 실질가입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자가 가입요건이다. 공제부금 추가보조제도는 기본이 되는 어업공제 외에, 특약의 형태로 추가보조 제도를 활용하여 어업인의 수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90) 강중호, “양식보험 품목확대를 위한 상품화 연구”, 국외출장보고서(일본),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4. 5.) 7면.; 일본의 어업수입안정화 대책에 관하여, http://www.gyosai.or.jp/panphlet_pdf/syunyu_antei.pdf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경우 작년부터 일정한 농작물 분야에서 시범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어선손해등 보상법

어선에 대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의한 손해의 복구 및 적절한 시기의 갱신을 용의하게 함과 동시에, 어선의 운항에 따라 예상 외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책임 등의 발생에 의해 어업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 더하여 어선에 적재한 어획물 등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이와 함께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여 어업 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어선손해등보상법 제1조)

일본은 우리 법과 마찬가지로, 어선손해 보상을 위하여 어선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 또는 어업의 종류 별로 어선보험의 보험목적이 되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어선보험조합을 설립하고 중소어업자의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1000톤 미만의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보험으로서 어선보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재보험을 위하여 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어선보험중앙회가 조합의 보험책임 (국가의 재보험은 제외)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특별회계로 어선보험 중앙회 및 조합의 보험책임의 일부를 분담(재보험 및 재보험)하고 있다. 또한 100톤 미만의 보험가입어선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⁹¹⁾

<표 8> 어선손해등보상법에 의한 보험⁹²⁾

어선 보험 ⁹³⁾	보통 보험	보통손해 보험 ⁹⁴⁾	어선에 대해 멸실, 침몰, 손상 그 외의 사고(전란 등에 의한 경우 제외)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전한다.
		만기보험	어선에 대해 멸실, 침몰, 손상 그외의 사고(전란 등에 의한 경우

91) 일본 어선손해 등 보상법 제127조(재보험자)

92) 일본 어선손해등 보상법의 어선보험 및 어선선주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의 종류를 분석하여 정리하였음.

		95)	제외)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전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불한다.
어선 선주 책임 보험 ⁹⁶⁾	기본손해		어선의 운항에 의해 생긴 예상 외의 비용 및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손해(전란 등에 의한 경우 제외)를 보상한다.
	인명손해		인명 및 승객 손해 이외의 자기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자기의 배상책임에 의한 배상
	승객손해		어선의 운항에 의해 생긴 해당 어선의 승무원의 사망 등에 대한 노동협약에 따른 지불
어선승조선주보험 ⁹⁷⁾			어선의 운항에 의해 선원선주의 사망 그 외의 사고가 생긴 경우(전란 등에 의한 경우 제외)에 일정 금액을 지불
어선집하보험 ⁹⁸⁾			어선에 적재한 어획물 등에 대해 멸실, 유실, 손상 그 외의 사고(전란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생긴 손해를 보전한다.
임의보험 ⁹⁹⁾			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어선 이외의 선박으로 어장에서 운반되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에 대해 멸실, 유실, 손상 그 외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전한다.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에 사용되는 소형선박(유람선)의 운항에 따라 유람선의 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다음의 손해를 보전한다. ① 어선 그 밖의 선박 등에 대한 배상책임에 따른 배상에 의한 손해 ② 어선 그 밖의 선박에 의한 유람선 또는 그 승무원의 수색 및 구조에 들어간 비용 부담에 의한 손해

93) 일본 어선손해 등 보상법, 제108조(어선보험)

94) 일본 어선손해 등 보상법, 제112조(보통손해보험)

95) 일본 어선손해 등 보상법, 제113조의9(만기보험)

96) 일본 어선손해 등 보상법, 제114조(어선선주 책임보험) 이하.

97) 일본 어선손해 등 보상법 제122조(어선승조 선주보험)

98) 일본 어선손해 등 보상법 제126조의2(어선집하보험)

99) 일본 어선손해 등 보상법 제143조의2(임의보험사업), 제143조의3(임의보험의 정의).

제5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과제 도출

제1절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어업인의 수입보장보험
및 안전보장보험의 활성화

제2절 어업용 생산시설물에 대한 풍수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제3절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관리의 체계화

제5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과제 도출

제1절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어업인의 수입보장보험 및 안전보장보험의 활성화

농업과 어업은 1차산업의 큰 축이지만, 생산활동의 형태나 위험도,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결과, 투입비용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후변화의 영향이나 속도, 회복가능성 등의 차원에서도 농업과 어업이 각기 다른 성격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어업 분야에서는 양식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형태의 재해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작물의 경우, 사과 등 상품작물을 중심으로 수입보장보험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일부 작물을 중심으로 수입보장보험의 법제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점차 재해보험의 영역에서 수입보장보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어업 분야의 경우 수입보장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야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재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획에는 적용되지 않고 농업과 유사한 형태의 양식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상품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어업재해보상법을 통해 어선어업, 즉 소규모 어선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어획활동에 대해서도 어획공제형태로 재해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양식 공제와 특정 양식공제, 어구공제 등이 별도의 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어업인의 수입 안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 및 추가공제(우리 법의 특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양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현행 양식물 재해보험의 특약이나 수입보장보험의 시범사업 운영시, 일본의 보험금(공제금) 추가보조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15년 1월에 제정되어, 2016년 1월에 시행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경우 농업인, 어업인의 4대보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보험으로 기대되고 있다.¹⁰⁰⁾ 동 법은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안전보험으로서, 농어업종사자 보호 및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⁰¹⁾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과 같이 농어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현재 50%의 국비 지원 외에,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¹⁰²⁾

최근 수협중앙회는 2016년 1월 어업인 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¹⁰³⁾ 새롭게 출시된 어업인안전보험은 기존 수산인안전공제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천일염 제조 종사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급여 500만원, 재활급여 최대 500만원, 행방불명급여 최대1000만원, 장례비 1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수산인안전공

100) 한겨레, “산재보상받듯 농어업인에게도 안전재해보험 필요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7023.html>(2017.10.16. 방문)

101)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조.

102) 최근 농협은 농업인 안전보험상품을 출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국비 및 지자체 지원비율을 70% 전후로 높이고,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시행지침을 제시하였다. “2017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안)”.

103) 파이낸셜 뉴스, “어업사고 피해보장 안전보험 출시”, 2016. 1. 7.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601071719396567>(2017. 10. 16. 방문)

제에서 제외됐던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발생된 질병도 새롭게 추가되면서 보장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또한 기존의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지급하던 입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 보장급여 항목은 계속 유지되었다.

지원대상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 근로자와 그 배우자이며, 이 때 겸업 근로자도 포함된다.¹⁰⁴⁾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 어업자, 양식·양어 종사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¹⁰⁵⁾ 동 보험은 농어업인의 산재보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보험이기는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양식물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임의보험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에 대한 홍보와 가입확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 2 절 어업용 생산시설물에 대한 풍수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농작물 등에 대한 재해보험 외에, 풍수해로 인해 건물, 시설물 등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도입되었다. 동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목적(제1조)으로,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¹⁰⁶⁾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¹⁰⁷⁾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경우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¹⁰⁸⁾ 및 피해가능성 및 보험의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104)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 제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즉 이 때의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5) 정부24,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20006>(2017. 10. 19. 방문)

106) 풍수해보험법 제2조 제1호.

107)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인 한편, 풍수해보험법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이다.

는 시설물을 풍수해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한편¹⁰⁹⁾ 동 시행령 제2조는 건축물 외에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도 풍수해보험법상의 보험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풍수해보험법에 따르면 건축물 외에, 농업용 또는 임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생산시설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업용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은 풍수해보험의 대상영역에서 제외되며, 양식 관련 시설물은 양식물 재해보험의 특약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나 최근 장어, 새우 등을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양식이 아니라 육상에서 건축물이 아닌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물로도 양식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림2] 장어 양식장¹¹⁰⁾



108)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9) 풍수해보험법 제4조.

110) 출처, 하이그린에너지(주) <http://www.higreenenergy.co.kr>, 2017.10.10. 방문

[그림 3] 새우 양식장¹¹¹⁾

종래 광어 등의 양식의 경우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물에서 주로 양식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장어나 새우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라도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물에서 양식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¹¹²⁾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장 수요에 따른 기술발전 및 응용에 발맞추어 발전하고 있는 양식업과 관련하여, 이들 생산시설물에 대한 보험목적물의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중 양식물 재해보험의 경우, 생산된 양식물을 부보대상으로 하여 시설물은 특약가입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육상의 어업용 양식시설물¹¹³⁾, 즉 양식용 비닐하우스나 온실형태의 시설물은 풍수해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수해보험

111) 한겨레, “전남, 친환경 ‘새우 양식’ 기술 보급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7158.html>(2017. 10. 16. 방문),

일요신문, “인천시,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새우 양식 성공”,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5900(2017. 10. 16. 방문)

112) 최근 제주에서 광어의 경우에도 지붕이 없는 육상시설물에서 양식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 동아일보, “차광막 없애고 바닥엔 모래, 자연담은 특별한 광어양식장”, 2016. 10.24.기사

113) 이 때의 양식시설물은 건축물에 포함되기 어려운 형태의 시설물을 의미한다.

법 시행령의 시설물의 적용범위를 농업용, 임업용 온실 및 비닐하우스 외에, 어업용 온실 및 비닐하우스로 확대하는 법령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적용범위 확대

현행	개정안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임업용·어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절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관리의 체계화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의 큰 축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물 재해보험이며, 각 보험의 소관부처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정책보험과)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장 총칙 외에, 제2장 재해보험사업에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양식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보상범위, 가입자, 사업자, 보험요율,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제3장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운용 등에 대하여 정하고, 제4장에서는 보험사업의 관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일반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정책보험의 경우에도 재보험제도는 해당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위험분산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며, 특히 정책보험의 경우 국가가 재보험사업의 핵심 주체가 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1항은 국가가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운영하도록 근거를 두는 한편, 제21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동법 제24조에 따라 재보험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융원)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5조의2에서 농금융원이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즉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상품의 연구 및 보급, 통계생산, DB 구축 및 분석,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¹¹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는 2014년 12월 4일 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어업에 대한 정책보험 활성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이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새로 도입되었다.

즉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된 이후 보험금 1조 4,551억여 원을 재해피해 농어가에 지급하는 등 농어가 소득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충분하지 못한 면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농어가가 원하는 보험상품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손해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제도가 운영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¹¹⁵⁾ 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¹¹⁶⁾ 하고 이 개정을 통해,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사 제도 및 재해보험사업 관리에

114)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2. 재해보험 상품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115) 대한민국 관보 제18278호(2014.6.3.) 27면.

116) 법제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14.12.4.] [법률 제12729호, 2014.6.3.,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한 제25조의2가 신설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조문제목하에, 재해보험상품의 관리감독, 보험상품의 연구, 개발, 통계·DB 구축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해당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25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농업과 어업 등 적용대상에 관계없이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전체에 있어 중요한 기초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정하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감독, 재해보험 상품 연구 및 보급, 재해 관련 통계의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은 농작물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양식물 재해보험의 운영에도 매우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으로 인해 농금원은 재해보험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하여만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식물 재해보험의 경우 해당 업무는 수협 등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나,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농협이 수협보다 더 큰 규모의 재해보험 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식물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와 운영, 기초 연구를 농금원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법 제24조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 재보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는 농금원이 수행하도록 정하면서, 재해보험 사업 관리업무 중 양식물 재해보험만 제외한 해당 업무를 농금원에게 위탁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맞지 않거나와 결과적으로 양식물 재해보험 등 어업 분야의 재해보험의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를 간과하는 법적 제한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6장

결론

제6장

결론

이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보험 및 어업인 안전보험 등, 어업 분야 재해보험법제와 미국 및 일본과 어업 분야 지원 정책 및 재해보상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16년에 수행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어업 분야의 재해보험에 대한 정책이나 법제가 농작물 등에 비해 다소 지연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은 농작물 재해보험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논의되기 시작한 어업 분야 수입보장보험상품의 경우, 농작물 분야에서는 이미 2014년에 도상연습을 거쳐 시범사업으로 수입보장보험상품이 출시 활용되고 있다.

농업과 어업은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인 만큼, 어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책보험의 활용, 특히 양식물 재해보험 외에 어재보험 및 어업인 안전보험의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어업재해보상법에서 어획공제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4년 일정한 농작물을 중심으로 수입보장보험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어업 분야의 수입보장보험 도입 및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양식물 재해보험이 부가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보험 재보험에 관한 업무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되어 이루어지고, 손해분석·평가 및 DB관리, 상품개발 연구 등에 대하여 양식수산물재

해보험의 영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에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관리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거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관리에 관한 근거를 수협중앙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명문의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본과 같이 어업 분야의 재해보험을 다루는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별도로 풍수해보험법을 살펴보면,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보험목적물에 건물 외에 농업용·임업용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되나 어업용 생산시설은 제외되며, 어업용생산시설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기술개발을 통해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물에서도 양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비닐하우스 형태의 어업용 생산시설을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중호, “양식보험 품목확대를 위한 상품화 연구”, 국외출장보고서(일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5..
- 김동겸, “손해보험의 이해(19) : 정책성 보험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3. 4.
- 김봉태, 이상건, 정명생,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의 특성 분석”, 수산경영연구, 제45권 제3호, 2014.
- 김현용,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방안”, 수협조사월보, 2007.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양식산업 투자 유망분야 분석”, 2017.
- 농협, “2017년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안)”
- 박기령,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I) - 농작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6.
- 박창석, 김동현,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주요 전략과 과제”, Special Issue(제77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9. 5.
- 보험개발원, “어업수입보장보험 개요”, 2016.
- 손용정, 최동오, “한중 FTA 체결후 수산업 보완대책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9권 1호, 한국도서학회, 2017.
- 수협 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일본 수산관련 법규집」, 2009.
- 옥영수, “일본 어류양식업의 발달과정과 시사점”, 월간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7.

육근형, “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업분야 저감부문 이슈와 대응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이승준, 안병옥,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관한 대응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이인희, 농어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5.

장창익,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해양수산업분야의 추진과제”, (웹진) SEA&, (사)한국해양산업협회, 2015. 10.

강버들, 장창익,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수산교육 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29권 2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7. 5.

최병배, “농어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자연재해 공제제도”, 물과 미래, 2007.

홍은경, “SDG 최종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 - 환경보호”, 국제개발협력, 2016.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해외양식업 진출의 문제점과 선결과제”, 2015.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3차 기르는 어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1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 전년보다 다소 빨라져- 국립해양조사원, 해수면 상승률 산정 및 상승 원인 일부 규명 -”, 2016. 12. 21.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201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2017년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안내”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메기, 향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출시- 31일(수)부터 주산지인 충남 및 전북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2017. 5. 2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1→24개 품목으로 확대”, 2016. 4. 19. .

해양수산부, 규제영향분석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적용범위 확대)(2017.05. 24)

한상욱, “한중FTA가 한국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도서연구 제27권 2호, 한국도서학회, 2015.

K.R. Criddle, “The legal context of U.S. fisheries management and the evolution of rights-based management in Alaska”, Case Studies on fisheries self-governance. FAO, 2006

Risk Management Agency, “The feasibility of crop insurance for freshwater aquaculture”, USDA, 2011. 09.

UNFCCC(2011),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16th Session, Held in Cancun from 29 November to 10 December 2010, FCCC/CP/2010/7/Add.1.

UNFCCC(2014),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19th Session, Held in Warsaw from 11 to 23 November 2013, FCCC/CP/2013/10/Add.1.

<홈페이지>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

일본 수산성 <http://www.jfa.maff.go.jp/index.html>

일본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 <http://www.gyosai.or.jp/index.html>

일본농림어업손해보상제도, <http://www.maff.go.jp/j/council/hoken/h23/pdf/data3.pdf>

어선보험 · 어업공제사업개요, <http://www.jfa.maff.go.jp/j/hoken/pdf/04siryu3.pdf>

어업수입안정대책, http://www.gyosai.or.jp/panphlet_pdf/syunyu_antei.pdf

수협중앙회, https://suhyup.co.kr/service/etcinfo_1202.jsp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sub02/11.do>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20006>

어업 in 수산, “수협, 어업인 재해 대비 ‘어업인안전보험’ 나온다. - 이달 7일 출시, 어업인 사회안전망 확대 · 강화 상품-”, 2016. 01. 14.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1>, 2017. 9. 7 방문.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20006>, 2017. 9. 7. 방문.

한겨레, “산재보상받듯 농어업인에게도 안전재해보험 필요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7023.html>(2017.10.16. 방문)

파이낸셜 뉴스, “어업사고 피해보장 안전보험 출시”, 2016. 1. 7.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601071719396567>(2017. 10. 16. 방문)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
회

부 록

[일본 어업재해보상법]

1964년 법률 제158호

어업재해보상법

목차

제 1 장 총칙 (제1조~제3조)

제 2 장 어업공제단체의 조직 및 감독

제 1 절 총칙 (제4조~제11조)

제 2 절 어업공제조합

제 1 관 조합원 (제12조~제21조)

제 2 관 관리 (제212조~제43조의 2)

제 3 관 설립 (제44조~제49조)

제 4 관 해산 및 청산 (제50조~제61조의 5)

제 3 절 어업공제조합연합회 (제62조~제67조)

제 4 절 어업공제조합연합회와 어업공제조합과의 합병 (제67조의 2~제67조의 8)

제 5 절 감독 (제68조~제76조)

제 3 장 어업공제조합의 어업 공제사업

제 1 절 통칙 (제77조~제103조)

제 2 절 어획 공제 (제104조~제103조의 3)

제 3 절 양식 공제 (제104조~제125조)

제 4 절 특정 양식 공제 (제125조의 2~제125조의 12)

제 5 절 어업시설 공제 (제126조~제137조)

제 4 장 어업공제조합연합회의 어업 재공제사업 및 어업 공제사업

제 1 절 어업 재공제사업 (제138조~제147조)

제 2 절 어업 공제사업 (제147조의 2)

제 5 장 정부의 어업공제보험 사업 (제147조의 3~제194조)

제 6 장 국가의 조성 등 (제195조~제196조의 2)

제 6 장의 2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의 어업재해보상 관계 업무 (제196조의 3~제196조의 11)

제 6 장의 3 잡칙 (제196조의 12~제196조의 21)

제 7 장 벌칙 (제197조~제201조)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중소어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어업에 있어서 이상현상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의해 생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어업공제단체와 정부가 시행하는 어업재해보상제도 및 제도의 건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중소어업자의 어업재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조 어업재해보상제도는 어업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어업공제사업, 어업공제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어업공제사업 또는 어업공제사업 및 정부가 시행하는 어업공제보험사업에 의해 중소어업자의 상호구제의 정신을 기조로 어획금액 혹은 양식에 관한 생산금액의 감소, 또는 양식수산동식물, 양식시설 혹은 어업도구에 과한 손해에 관해 필요한 급부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중소어업자」는 다음에 열거된 자를 말한다.

어업을 영위하는 개인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협동조합

어업생산조합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2,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인의 수가 3

백명 이하이고 더불어 사용하는 어선(어선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어선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합계 총 톤수가 3천톤 이하인 법인

제 2 장 어업공제단체의 조직 및 감독

제 4 조 (어업공제단체의 목적) 어업공제조합 및 어업공제조합연합회(이하 「어업공제단체」라고 총칭한다.)는 중소기업자의 협동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계열단체로서 협동조직을 구성하는 중소기업자를 위해 어업공제사업 또는 어업재공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법인격) 어업공제단체는 법인이다.

제 6 조 (명칭) 어업공제단체는 그 명칭 중 어업공제조합 또는 어업공제조직연합회라는 문자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
2항 어업공제단체가 아닌 자는 명칭에 어업공제조합 또는 어업공제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된다.

제 7 조 (지역구(地區)) 어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지역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국행정구역을 따른다.
2항 어업공제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역구는 전국의 구역을 따른다.

제 8 조 (주소) 어업공제단체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등기) 어업공제단체는 政令의 규정에 따라 등기 하지 않으면 안된다.
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제10조(사업) 조합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업공제사업 및 이의 부대사업을 시행한다.

2항 조합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외에 해당 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지역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항 연합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업재공제사업 및 이의 부대사업(조합과 합병한 경우에는 어업재공제사업 및 어업공제사업 또는 이의 부대사업)을 시행한다.

4항 연합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외에 해당 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지역재생사업(조합과 합병한 경우에는 지역재공제사업 및 지역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어업공제단체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0일에 종료한다. 단, 설립 당초의 사업연도는 어업공제단체의 성립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2절 어업공제조합

제1관 조합원

제12조(조합원자격)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지는 자는 다음에 열거된 자이며, 조합의 지역구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어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제13조(출자) 조합원은 출자 한 단위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2항 출자 한 단위의 금액은 1만엔으로 정한다.

3항 출자는 현금으로 출자의 각 단위 당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4항 조합원은 출자의 지분에 있어서 상계로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5항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의 한도에 있다.

(지분의 양도)

제14조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2항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도받으려고 할 때에는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3항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항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제15조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수령할 수 없다.

(의결권)

제16조 조합원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항 조합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항 조합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 대신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그 외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농림수산성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으로 행사할 수 있다.

4항 앞의 2항, 3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5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제출 대신 대리권을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경우)

제16조의 2 조합과 특정 조합원의 관계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가입)

제17조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항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정권의 규정에 따라 가입에 대해 조합의 승인을 받아 인수출자(引受出資) 단위수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거나, 혹은 조합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조합원이 된다.

(탈퇴)

제18조 조합원은 다음에 열거된 사유에 의해 탈퇴한다.

조합원 자격의 상실

해산

제명

2항 제명은 정권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해당 총회의 회의일자의 10일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3항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9조 조합원은 90일전까지 예고하고 사업연도 말에 탈퇴할 수 있다.

(탈퇴자에 대한 환불)

제20조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 탈퇴자는 정권의 규정에 따라 출자액의 한도에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 조합과 해당 조합원이었던 어업협동조합 혹은 어업협동조합연합의 조합원 또는 회원(해당 어업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다른 어업협동조합 혹은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조합원 또는 회원인 자로서 농림수산성령이 규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사이에 관련된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농림수산성령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권의 규정에 의해 해당 공제계약의 전부가 종료하거나 혹은 실효할 때까지 탈퇴자에 대해 전항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탈퇴 시(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을 정지한 경우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출자단위의 감소)

제21조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아 사업연도 말에 출자단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2항 조합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단위를 감소시킬 때에는 90일전까지 조합에 예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3항 제1항의 승인의 기준은 출자단위를 감소하려는 조합원 또는 회원에 관련된 어업공제사업 이용 상황 등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이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단위의 감소에 대해서는 前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관 리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

제22조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목적

명칭

지역구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자격 및 조합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

출자의 지불 방법

어업공제사업의 종류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 처리에 관한 규정

준비금에 관한 규정

임원의 정수(定數), 직무의 분담 및 선임에 관한 규정

공고의 방법

2항 조합이 지역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전항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지역공제사업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제규정)

제23조 조합은 공제규정으로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업공제사업의 상세에 관한 사항

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공제금액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에 관한 사항

손실 또는 손해의 인정에 관한 사항 그 외 어업공제사업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앞의 각호에 열거된 사항 외에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그 외 농림수산성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2항 농림수산대신은 모범공제규정례를 정할 수 있다.

(규약)

제24조 다음에 열거된 사항은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총회에 관한 사항

업무의 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
그 외 필요한 사항

(임원의 정수 및 선임)

제25조 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2항 이사의 정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3항 임원은 정권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설립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설립위원과 공동으로) 선임한다.

4항 이사 정수의 최소 5분의 3은 조합의 조합원인 어업협동조합 혹은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사(경영관리위원을 두는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경영관리위원. 이하 이 항에 있어서 동일) 또는 조합의 조합원인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은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이하 이 항에 있어서 동일)이 아니면 안된다. 단, 설립당시의 이사 정수의 최소 5분의 3은 창립총회의 개회까지 출자의 인수를 한 어업협동조합 혹은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사 또는 그 때까지 출자의 인수를 한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합병에 관련된 조합의 조합원인 어업협동조합 혹은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사 또는 합병에 관련된 조합의 조합원인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 안된다.

(조합과 임원의 관계)

제25조의 2 조합과 임원과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임원의 임기)

제26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내로 정관으로 정한다. 단, 정관에 의해 임기를 임기 중의 최종 사업연도에 관한 통상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2항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1년이내의 기간으로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단, 창립총회의 의결에 의해 임기를 임기 중의 최종 사업연도에 관한 통상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3항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전항의 규정의 적용은 동항 중 「총립창회에 있어서」를 「설립위원회」로, 동항 단서 중 「창립총회의 의결에 의해」를 「창립위원회」로 변경한다.

4항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이 결여된 경우에, 제36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의 경우를 제외하고, 퇴임한 이사 또는 감사는 후임자(제28조의 6 임시이사를 포함한다.) 중 적어도 한 명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제27조 임원은 법령, 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처분, 정관, 공제규정, 규약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2항 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 임원은 조합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항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감사의 겸직금지)

제28조 감사는 이사 또는 조합의 사용인을 겸해서는 안된다.

(조합의 업무결정)

제28조의 2 조합의 업무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의 과반수로 정한다.

(조합의 대표)

제28조의 3 이사는 조합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조합을 대표한다. 단, 정관의 규정에 반할 수 없고, 또한 총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제28조의 4 이사의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사의 대리행위의 위임)

제28조의 5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특정 행위의 대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시이사)

제28조의 6 이사가 결여된 경우에 업무가 지연되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대신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임시 이사의 선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사의 자기계약 등의 금지)

제29조 조합이 이사와 계약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의 소송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감사의 직무)

제29조의 2 감사의 직무는 다음에 열거된 내용에 따른다.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재산의 상황 및 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회 또는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는 일
전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총회의 소집)

제30조 이사는 매 사업연도에 한 번 통상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2항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그 청구가 있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서면의 제출 대신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이유를 해당 전자적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해당 조합원은 해당 서면을 제출했다고 간주한다.

3항 전항 전단의 전자적 방법(농림수산성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제외한다.)에 의해 행해진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이유의 제공은, 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갖춰진 파일에 기록된 때에 해당 이사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제33조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그 자의 주소(그 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수령할 장소를 조합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보내면 충분하다.

2항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달해야 시점에 도달했다고 간주한다.

3항 총회의 소집통지는 그 회의일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장 어업공제조합의 어업 공제사업

제1절 통 칙

(어업공제사업의 종류)

제77조 조합이 수행하는 어업공제사업의 종류는 다음에 열거한 내용에 따른다.

- 어획공제
- 양식공제
- 특정양식공제
- 어업시설공제

(어업공제사업의 내용)

제78조 어획공제는 피공제자 또는 그 구성원이 영위하는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중의 조업에 의한 어획금액 혹은 구성원을 통한 어획금액의 합계액이 공제한도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피공제자의 구성원 중 그가 영위하는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중의 조업에 의한 어획금액이 단위공제한도액에 도달하지 못한 자가 있는 경우, 피공제자 혹은 그 구성원의 손실에 대해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말한다.

2항 양식공제는 피공제자 또는 그 구성원이 영위하는 양식업에 의한 양식수산물(양식 중의 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동일)이 그 양식 중에 유실되는 등의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구성원이 손해에 대해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말한다.

3항 특정양식공제는, 피공제자가 영위하는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중 양식에 의한 생산금액이 공제한도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또는 피공제자의 구성원 중 그가 영위하는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중 양식에 의한 생산금액이 단위공제한도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구성원의 손실에 대해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말한다.

4항 어업시설공제는 피공제자가 영위하는 어업에 사용하는 양식시설 또는 어업도구가 그 사용 중에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등의 경우 피공제자의 손해에 대해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업공제사업의 실시)

제79조 조합은 政令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어획공제, 양식공제 및 특정양식공제 중 하나 이상의 종류의 어업공제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제계약의 성립)

제80조 공제계약은, 어획공제에 있어서 제104조가규정하는어업의종류별, 양식공제에 있어서는 제114조가규정하는양식업의종류별, 특정양식공제에 있어서는 제1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양식업의 종류별, 어업시설공제에 있어서는 공제목적의 종류인 어업시설 또는 어업도구별로, 농림수산성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가 공제규정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공제규정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2항 조합은, 제104조 제2호에 열거된 어업에 관한 공제계약, 제114조의 政令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업에 관한 공제계약, 또는 제1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특정양식업(이하 이 절에 있어서 「특정양식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이들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부금의 지분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수산성령이 규정한 것들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공제규정에 따라 전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하는 자에게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부금에 충당하기 위해 공제규정이 정하고 있는 금액을 신청증거금으로 제공하도록 시킬 수 있다.

3항 전항의 신청증거금의 반환, 공제부금에의 충당 방법, 그 외 정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이 규정한다.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제한)

제81조 조합은 공제계약의 체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공제계약에 있어서 이를 체결한다면 그 공제계약에 관한 어업, 양식수산동식물, 양식시설 또는 어업도구에 대해 공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그 외 해당 공제계약의 체결에 의해 어업공제사업의 적정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농림수산성령에 규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해당 공제계약은 체결해서는 안된다.

2항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공제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공제부금의 지불)

제82조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제계약자」라 한다.)는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책임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조합에게 공제부금의 금액(다음 항에 의해 분할지불 하는 경우에는 그 첫번째 지불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지불기한의 5일전까지 공제부금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이 규정한 기준에 의거한 공제규정에 따라 조합이 정한 概算금액(다음 항에 의해 분할지불 하는 경우에는 그 첫번째 지불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2항 공제부금은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불은, 해당 공제부금이 제195조 제1항 또는 1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에 관한 것일 경우, 그 보조에 관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면 충분하다.

4항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概算금액으로 지불한 경우의 정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불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이 정한다.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불을 그 지불기한까지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제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공제부금 상계의 제한)

제83조 공제계약자는 조합에 지불할 공제부금에 대하여 상계로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공제증서)

제84조 조합은 공제계약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공제증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2항 전항의 공제증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에서 규정한다.

(통상 해야 할 관리 등의 의무)

제85조 피공제자(제105조 제1항 제1호 나항에 열거된 조합원은 동호나항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자, 동항 제2호 나항에 열거된 조합원은 동호나항이 규정하는 규약이 정한 중소기업자, 동

호 다항에 열거된 단체는 그 구성원, 제125조의 3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조합원은 동호가 규정하는 규약이 정한 중소어업자를 포함한다.)는 어업공제에 있어서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의 어획물, 양식공제에 있어서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공제목적인 양식수산물, 특정양식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특정양식업의 양식에 의한 수산물, 어업시설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공제목적인 양식시설 및 어업도구에 대해, 통상 해야 할 관리 그 외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2항 어획공제 또는 특정양식공제에 있어서 피공제자(제105조 제1항 제1호 나항에 열거된 조합원은 동호 나항이 규정하는 중소어업자, 동항 제2호 나항에 열거된 조합원은 동호 나항이 규정하는 규약이 정한 중소어업자, 동호 다항에 열거된 단체는 그 구성원, 제125조의 3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조합원은 동호가 규정하는 규약이 정한 중소어업자를 포함한다.)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한편,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 또는 특정양식업에 대해 통상의 조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통상 중소어업자가 하는 어획 또는 양식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손해방지 등의 처지의 지시)

제86조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前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물건에 대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특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공제자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농림수산성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부담한다.

(피공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제87조 조합은 피공제자가 장부를 비치하고,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에 대해 조업의 상황 혹은 양식수산물 등의 판매, 보관 등의 상황, 또는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양식시설 혹은 어업도구에 대해 사용 상황을 기입할 것, 이들 사항에 관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조합에 통지할 것, 그 외 피공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사항을 공제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피공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 양식수산동식물, 양식시설 혹은 어업도구에 대한 공제사고에 의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적정하게 인정하기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통지)

제88조 피공제자는, 제80조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 공제규정에 따라 이를 조합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망, 해산 등의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

제89조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에 의한 해산, 또는 분할(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경영의 전부를 승계, 또는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공제목적인 양식시설 혹은 어업도구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한 경우 포괄승계인은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상당한 기간내에 조합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승낙을 얻으면 피공제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공제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피공제자가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경영의 전부를 일체 양도하거나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공제목적인 양식시설 또는 어업도구를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도 동일하다. 2항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의 승낙을 거절할 수 없다.

(사망, 해산 등의 경우 공제계약의 실효)

제90조 前조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동항이 규정하는 포괄승계인 혹은 양수인이 동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동항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였지만 동항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동항이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경영의 일부를 분할하는 승계가 있었던 때, 또는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경영의 전부 혹은 일부의 양도, 또는 공제목적인 양식시설 혹은 어업도구의 양도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경영의 폐지 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계약은 해당 승계 또는 폐지 시점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이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공제계약자 또는 그 승계인은 농림수산성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대해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공제부금 중 純공제부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제계약의 해제)

제91조 조합은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 양식수산동식물, 양식시설 혹은 어업도구에 대해, 기본적인 조업이나 관리 또는 사용의 조건 혹은 방법의 변경으로 공제규정에서 정한 것 보다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경우 해당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제는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항 피공제자는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 양식수산동식물, 양식시설 혹은 어업도구에 대해, 전항이 규정하는 조업, 관리 또는 사용의 조건 혹은 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의 해제는, 조합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수령하거나, 제1항이 규정하는 조업, 관리 또는 사용의 조건 혹은 방법의 변경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4항 피공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의 해제가 있는 경우, 해당 조업, 관리 또는 사용의 조건 혹은 방법의 변경이, 해당 피공제자(제105조 제1항 제1호 나항에 열거된 조합원은 동호 나항이 규정하는 중소어업자, 동항 제2호 나항에 열거된 조합원은 동호 나항이 규정하는 규약이 정한 중소어업자, 동호 다항에 열거된 단체는 그 구성원, 제125조의 3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조합원은 동호가 규정하는 규약이 정한 중소어업자를 포함한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농림수산성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대해 해당 공제계약에 관련된 공제부금 중 純공제부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산에 의한 공제계약의 실효)

제92조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조합은 농림수산성령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에 관련된 공제부금 중 純공제부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면책사유)

제93조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 조합은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불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공제계약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제80조 제1항의 신청서를 부실 기재 한 경우
공제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공제부금을 동향 후단의 概算금액으로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정산금의 지불,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분할지불을 하는 경우 제2회차 이후의 지불금액의 지불이 지연한 경우

피공제자가 제85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피공제자가 제86조 전단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피공제자가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이 정한 피공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피공제자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해야 할 사항 중 공제규정이 정한 중요사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통지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통지를 소홀히 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실 통지를 한 경우

피공제자가 제91조 제2항의 규정 또는 102조에서 준용하는 보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통지를 소홀히 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실 통지를 한 경우

어획공제 또는 특정양식공제에 있어서, 공제계약에 관련된 어업 또는 특정양식에 대해 제9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업의 조건 혹은 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의 현저한 변경 혹은 증가가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 피공제자가 어선의 손상 그 외 공제규정이 정한 사유에 의해 전체적으로 공제규정이 정한 日數 이상 조업하지 못했을 경우

그 외 政令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항 농림수산대신은 필요한 경우, 조합이 전항이 규정에 의해 지불을 면할 수 있는 공제금의 금액, 그리고 동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규정이 정한 사유 및 일수에 관해 필요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94조 조합은, 농림수산성령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의 금액이 소액이며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지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5조 조합은 공제금의 지불에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 농림수산성령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의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2항 조합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의 금액을 삭감하는 경우에도 그 지불하는 공제금의 금액은 연합회로부터 지불을 받은 재공제금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공제부금 등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제96조 공제부금의 지불을 받거나 또는 그 반환 혹은 환불을 받을 권리 및 공제금의 지불을 받거나 또는 그 반환 혹은 환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구분경리)

제97조 조합은 그 회계를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計定구분 별로 경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98조 조합은 매 사업연도 말에 존재하는 공제책임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의 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준비금의 적립)

제99조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전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2항 전항의 준비금은 손실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무에 대한 농림수산성령에의 위임)

제100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가 규정하는 외에 조합이 그 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준칙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사무의 위탁)

제101조 조합은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어업공제사업에 관련된 사업 중 공제계약의 신청서의 수리, 어획물 판매금액의 조사, 그 외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사항에 관련된 사무를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어업협동조합 및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전항이 규정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험법의 준용)

제102조 조합의 어업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보험법 제14조(손실발생의 통지), 제25조(청구권대위) 및 제32조(제1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보험료 반환의 제한)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한 경우의 조치)

제103조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조합이 수행하는 어업공제사업의 적정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 피공제자의 해당 어업공제사업에 따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政令으로 조합 또는 피공제자(피공제자가 되는 자도 포함한다)가 준수해야 할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어업재해보상법 제104조 어획공제는 다음에 열거된 어업에 대해 수행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되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어업법 제6조 제4항 제1호 제1종구획어업(籠朶를 설치하고 있는 등 간단한 방법에 의해 영위하는 어업에 한한다.), 동항 제3호의 제3종구획어업 및 공동어업권에 근거한 동조 제5항 제1호의 제1종 공공어업으로 政令이 규정하는 것

전호에서 열거한 어업, 제114조에서 열거한 어업 및 제1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특정양식업 이외의 어업으로 政令이 규정하는 것

어업재해보상법 제114조(양식공제 대상이 되는 양식업 및 구분) 양식공제는 政令에서 규정하는 양식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되는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어업재해보상법 제125조의 2(특정양식공제 대상이 되는 양식업 및 구분) 특정양식공제는 政令이 규정하는 양식업(이하 「특정양식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되는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어업재해보상법 제105조(피공제자의 자격) 제1항 어업공제의 피공제자 자격을 가지는 자(이하 이 절에 있어서 「피공제자격」이라고 한다)는 어획공제의 대상이 되는 어업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제1호 前조 제1호에서 열거한 어업에 속하는 어업에 관련된 어업공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나. 조합원(해당 조합원의 직접 구성원으로, 해당 조합원의 지역구내에 주소를 가지고, 政令에 따라 행정구역의 지사가 수면을 나눠서 정한 일정한 수역내에서 해당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어업자 전원(政令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의 지사가, 해당 중소어업자 전원의 주소 및 어획물의 판매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중소어업자의 주소지 전부가 포함되는 지역을 2개이상의 구역으로 나눠서 정한 경우에는, 정해진 구역별로 해당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해당 중소어업자의 전원)이, 공제부금의 분담금 및 공제금의 배분의 방법 등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규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조합원에 한한다.)

제2항 어획공제에 관련된 공제계약이 성립하여 피공제자가 된 자는 피공제자격자가 아니게 된 때에도 해당 공제계약에 있어서는 피공제자격자로 간주된다.

어업재해보상법 제105조(피공제자의 자격) 제1항 어업공제의 피공제자 자격을 가지는 자(이하 이 절에 있어서 「피공제자격」이라고 한다)는 어획공제의 대상이 되는 어업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제2호 전조 제2호에서 열거한 어업에 속하는 어업에 관련된 어획공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나. 조합원(해당 조합원의 직접 구성원으로, 政令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의 지사가 정한 구역별 및 해당 구역에 따른 전조 제2호에 열거된 어업을 나누는 구분별로, 해당 구역 내에 주소 또는 어업근거지를 가지고 또한 해당 구분에 관련된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어업자가, 공제부금의 분담 및 공제금의 배분 방법 등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사항

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규약이 정해져 있고, 해당 조합원의 직접 구성원으로 총 톤수 1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해당 구분에 관련된 어업을 영위하는 자 중 각호에서 열거하는 어업을 영위하는 일수가 일년에 걸쳐 90일(해당 구역에 대해 90일은 초과하여 120일까지 범위 안에서 政令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의 지사가 이와 다른 일수를 정한 경우 그 일수)을 초과하는 자의 3분의 2이상이 해당 규약이 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의 조합원에 한한다.)

어업재해보상법 제125조의 3 (피공제자의 자격) 제1항 특정양식공제의 피공제자 자격을 가지는 자(이하 이 절에 있어서 「피공제자격자」라고 한다.)는 특정양식업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제2호 특정양식공제에 관련된 공제계약의 성립에 의해 피공제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10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어획 공제

제104조 (어획 공제의 대상 어업 및 구분) 어획 공제는 다음에 나타내는 어업에 대하여 실시하며, 대상 어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1. 어업법 (1949년 법률 제267호) 제6조제4항제1호의 제1종 구획 어업(섞단을 부설하는 등 간이 방식으로 경영하는 것에 한함), 동항 제3호의 제3종 구획 어업 및 공동어업권에 근거하는 동조 제5항 제1호의 제1종 공동 어업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
2. 전호에 나타내는 어업, 제114조에 나타내는 어업 및 제125조의 2에 규정하는 특정양식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

제105조 (피공제자의 자격) 어획 공제의 피공제자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 절에 있어서 “피공제 자격자”라고 함)는 어획 공제 대상인 어업의 종류에 따르며, 다음에 나타내는 바와 같다.

1. 전조 제1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속하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에 나타내는 자

가.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

나. 조합원(해당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으로, 해당 조합원의 지구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수면을 나누어 정하는 일정 수역 내에서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중소 어업자 전원(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해당 중소 어업자 전원의 주소 및 어획물의 판매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중소 어업자의 주소지 전부가 포함되는 지역을 나누어 두 곳 이상의 구역을 정했을 때는 그 정한 구역별로 해당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해당 중소 어업자 전원)이 공제부금의 분담 및 공제금의 배분방법 등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규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조합원에 한함)

2. 전조 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속하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에 나타내는 자

가.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인 중소 어업자

나. 조합원(해당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으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구역별 및 해당 구역에 따라 전조 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을 나누어 정하는 구분별, 해당 구역 내에 주소 또는 어업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구분에 관한 어업을 경영하는 중소 어업자가 공제부금의 분담 및 공제금의 배분방법 등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규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이고 해당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이면서 총톤수 1톤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해 해당 구분에 관한 어업을 경영하는 자 가운데 동호에 나타내는 어업을 경영하는 일수가 1년 동안에 90일(해당 구역당 90일을 초과하여 120일까지의 범위 내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이와 다른 일수를 정했을 때는 그 일수)을 초과하되 3분의 2 이상인 자가 해당 규약을 정한 자에 포함될 때의 조합원에 한함)

다. 나목의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구역별 및 구분별, 해당 구역 내에 주소 또는 어업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구분에 관한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인 중소 어업자로 전원이 구성되어 있고, 공제부금의

- 분담 및 공제금의 배분방법, 대표자, 대표권의 범위 등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규약을 가진 단체
2.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의 성립에 따라 공제자가 된 자는 피공제 자격자가 아닌 경우라도 해당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피공제 자격자로 간주한다.

제105조의 2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으로 전조 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중소 어업자(동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해당 중소 어업자의 주소지 전부가 포함되는 지역을 나누어 두 곳 이상의 구역을 정했을 때는 그 정한 구역별 해당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해당 중소 어업자. 이하 “특정 제1호 어업자”라고 함)의 3분의 2 이상의 자가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함에 있어 동의를 한 경우로, 해당 동의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 있었을 때는 특정 제1호 어업자(해당 공시가 있은 후에 특정 제1호 어업자가 된 자를 포함)의 전원은 해당 규약을 정해야 한다. 단, 해당 공시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4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규약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제1호 어업자 중 2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3. 발기인은 특정 제1호 어업자의 동의를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특정 제1호 어업자의 동의를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시함과 동시에 발기인 및 관련 조합에 통지하고, 해당 동의가 동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발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6조 (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을 조합 간에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대상 어업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의 피공제 자격자로서 해당 공제계약의 성립에 따라 피공제자가 되는 자로 한정한다.

제107조 (공제계약의 체결 제한) 1의 어업 단위당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피공제 자격자는 해당 어업 단위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책임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제책임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다른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08조 (공제계약의 체결 신청 등) 제10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나타내는 조합원은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이 제10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졌을 때는 조합에 제104조제1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속하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의 체결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어획 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이 종료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의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구역별 및 구분별 해당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구분에 관한 어업을 경영하는 피공제 자격자로 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이하 “특정 제2호 어업자”라고 함)의 3분의 2 이상인 자가 제104조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속하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의 체결 신청을 하고,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으로서 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하거나 동호 다목에 규정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동호 다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함에 있어 동의를 한 경우, 해당 동의에 대하여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0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 있었을 때는 특정 제2호 어업자(해당 공시가 있는 후에 특정 제2호 어업자가 된 자를 포함)는 조합에 해당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의 체결 신청을 하거나 동호 나목 또는 다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해야 한다. 해당 어획 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이 종료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나타내는 조합원은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졌을 때는 조합에 제104조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속하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의 체결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어획 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이 종료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제105조제1항제2호 다목에 나타내는 단체는 동호 다목에 규정하는 규약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졌을 때는 조합에 제104조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속하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의 체결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어획 공제의 공제책임 기간이 종료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제105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은 전호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의 체결 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약의 설정에 대하여 동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 제2호 어업자의 동의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109조 (공제책임기간) 어획 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은 대상 어업의 종류별로 농림수산물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류 어업의 어업시기(연중무휴조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간으로 하고, 제104조제1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의 목적인 수산동식물의 생육 기간을 포함)를 기준으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0조 (공제금액) 어획 공제의 공제금액은 공제한도액(제104조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속하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에 대해서는 피공제자가 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한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계산한 단위공제한도액의 합계. 제113조의 2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및 제113조의 3 제2항에 있어서 동일)을 초과하지 범위 내에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정할 경우, 어업의 종류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농림수산물성 장관이 미리 공제금액의 최고 한도를 정했을 때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3. 제104조제1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의 공제금액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르되,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제111조 (공제한도액 등) 전조 제1항의 공제한도액은 공제계약별로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공제 자격자가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과거 일정 연간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제104조제1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에 대해서는 피공제 자격자가 제10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중소 어

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어업의 과거 일정 연간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104조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에 대해서는 피공제 자격자가 제105조제1항제2호 다목에 나타내는 단체일 때는 해당 구성원의 모두를 통틀어 해당 어업의 과거 일정 연간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동일)을 기준으로 해당 피공제 자격자의 해당 어업에 관한 경영 사정, 해당 피공제 자격자와 해당 어업에 관해 유사한 사정이 존재하는 해당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의 다른 피공제 자격자가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과거 일정 연간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과 기타 해당 지역에서의 어업사정을 감안하여 조합이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피공제 자격자가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종류(제104조제1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자가 제10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중소 어업자가 경영하는 모든 해당 어업의 종류로 하며, 제104조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자가 제105조제1항제2호 다목에 나타내는 단체일 때는 해당 구성원이 경영하는 모든 해당 어업의 종류로 한다. 제113조제1항 및 제4항에 있어서 동일)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2. 전조 제1항의 단위공제한도액은 공제계약별 및 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한 중소 어업자별로, 해당 중소 어업자를 전항의 피공제 자격자로 한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도액 또는 단위공제한도액을 정할 경우에 대한 제1항의 어획금액은 해당 어업의 조업에 관한 어획물에 의한 수입금액(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으로 간주되는 것의 금액을 포함)으로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이 인정하는 금액에 의한다.

제112조 (순공제부금율) 어획 공제의 순공제부금율은 대상 어업의 종류와 기타 위험의 정도를 구분하는 요인이 되는 사항으로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음 항의 위험등급에 관한 동항의 기준공제부금율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2. 농림수산성 장관은 어획 공제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와 기타 전항의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그 구분마다 기준공제부금율을 정해야 한다.

제113조 (공제금) 어획 공제(다음 항에 나타내는 것을 제외함)의 공제금은 공제계약별로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제104조제1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에 대해서는 피공제자가 제10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104조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에 대해서는 피공제자가 제105조제1항제2호 다목에 나타내는 단체일 때는 해당 구성원 모두를 통틀어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동일)이 해당 공제한도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 지불한다. 공제금의 금액은 해당 공제한도액에서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을 뺀 금액에,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종류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후, 여기에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04조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속하는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이고 피공제자가 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나타내는 조합원인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금은 공제계약별로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한 중소 어업자 가운데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이 해당 단위공제한도액에 미치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에 지불한다. 공제금의 금액은 해당 단위공제한도액에 미치지 않는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단위공제한도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에,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한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 합계액의 해당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단위공제한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비율, 해당 중소 어업자가 경영하는 모든 해당 어업의 종류에 관한 전항의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비율 및 공제금액의 해당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단위공제한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04조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속하는 어업으로서, 해당 어업에 관한 경영 사정 및 공제사고 발생의 양상에 비추어 공제금 지불에 대하여 특례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종류와 관련된 어획 공제의 공제금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공제계약별로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을 지불할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동시에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 수량(피공제자가 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한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 수량의 합계로 한다. 또한 피공제자가 동호 다목에 나타내는 단체일 때는 해당 구성원 모두를 통틀어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 수량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동일)이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과거 일정 연간의 조업에 관한 어획 수량(피공제자가 동호 나목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한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어업의 과거 일정 연간의 조업에 관한 어획 수량의 합계로 함)을 기준으로 조합이 정하는 기준 어획 수량(이하 “기준어획수량”이라고 함)에 1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수치를 곱하여 구한 수량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 지불한다. 공제금의 금액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 수량의 기준어획수량에 대한 비율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4.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로서 전3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금 지불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의 공제금 지불에 관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특약이 있는 공제계약 관련 공제금은 이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계약의 특약에 있어서 공제금 지불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

는 경우에 지불한다. 그 금액은 해당 공제계약의 특약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1호 또는 제2호에 나타내는 경우는 그 금액에 해당 각호에 나타내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에, 해당 피공제자(해당되는 자가 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한 중소 어업자 모두)가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종류에 관한 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후, 여기에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1. 피공제자가 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경우,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한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금액의 합계액의 해당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단위공제한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관련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
2. 전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에 관한 어획 공제일 경우,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어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조업에 관한 어획 수량의 기준어획수량에 대한 비율 관련 동항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
5. 제1항, 제2항 및 전항의 어획금액에 대해서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의 2(계속 신청 특약)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와 함께 계속 신청 특약을 둘 수 있다.

2. 전항의 계속 신청 특약은 체결되는 공제계약(이하 이 조에 있어서 “당초 계약”이라고 함)에 관한 공제책임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후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책임기간 시작일이 도래하는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으로서 당초 계약에 관한 어업단위 및 이에 관한 어업의 종류와 어업단위면서 이에 관한 어업의 종류가 동일한 것(이하 이 조에 있어서 “계속 계약”이라고 함)의 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계속 계약에 관한 제80조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 비율 및 전조 제1항으로부터 제4항까지 규정하는 공제금이 지불될 경우 및 해당 공제금의 금액 산정방법이 당초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해당 신청기간의 종료일에 제80조제1항의 체결 신청이 있던 것에 대한 특약으로 한다.

3. 계속 신청 특약은 당초 계약의 공제계약자가 계속 신청 특약을 해제하는 취지를 조합에 제기했을 때 또는 계속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을 잃었을 때 혹은 해제되었을 때(해당 해제가 제91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계속 계약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 비율은 제111조제1항의 비율이 개정된 경우와 기타 피공제자의 귀책 사유가 되지 않는 사유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신청 특약과 관계없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당초 계약에 관한 공제책임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후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책임기간의 시작일이 도래하는 계속 계약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 비율은 전항의 규정에 따르되, 피공제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 해당 계속 계약의 직전 공제계약(이하 이 조에 있어서 “직전 계약”이라고 함)의 공제책임기간에 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지불 받지 않은 것으로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속 신청 특약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 계약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 비율을 웃도는 비율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 계속 계약의 공제한도액 또는 단위공제한도액은 제1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이 규정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이 직전 계약의 공제한도액 또는 단위공제한도액을 기준으로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되는 상한금액을 초과하거나 하한금액 미만인 경우는 각각 해당 상한금액 또는 해당 하한금액으로 한다.
7. 당초 계약의 피공제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고, 해당 당초 계약 및 계속 계약 중 어느 공제책임기간이라도 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지불 받지 않을 때 또는 지불을 받은 공제금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않을 때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부금 가운데 순공제부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일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3조의 3(포괄 계속 신청 특약) 제104조제2호에 나타내는 어업에 속하는 어업이고, 해당 어업에 관한 공제사고의 발생 양상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특례를

-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종류인 것에 관한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와 함께 포괄 계속 신청 특약을 둘 수 있다.
2. 전항의 포괄 계속 신청 특약은 체결되는 공제계약(이하 이 조에 있어서 “당초 계약”이라고 함)에 관한 공제책임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후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책임기간의 시작일이 도래하는 어획 공제 관련 공제계약으로 당초 계약에 관한 어업단위 및 이에 관한 어업의 종류와 어업단위면서 이에 관한 어업의 종류가 동일한 것(이하 이 조에 있어서 “계속 계약”이라고 함)의 모두에 대하여 각각의 계속 계약에 관한 제80조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 비율,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하는 공제금이 지불될 경우 및 해당 공제금의 금액 산정방법 및 공제한도액 또는 단위공제한도액이 당초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해당 신청기간의 종료일에 제80조제1항의 체결 신청이 있던 것에 대한 특약으로 한다.
 3. 전항의 특약에 관한 공제한도액 또는 단위공제한도액에 대해서는 제1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속 계약의 체결에 관한 제81조제1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의 내용 중 “해당 공제계약에 대하여 이를 체결한다면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어업, 양식 수산동식물, 양식 시설 또는 어구에 대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기타 해당 공제계약”인 경우는 “해당 공제계약”으로 한다.
 5. 포괄 계속 신청 특약은 계속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때, 그 효력을 잃었을 때 또는 해제되었을 때(해당 해제가 제91조제4항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절 양식 공제

제114조 (양식 공제의 대상 양식업 및 구분) 양식 공제는 정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에 대하여 실시하며, 대상으로 하는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제115조 (공제목적 및 공제사고) 양식 공제의 공제목적은 양식 수산동식물이자 정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식 공제의 공제사고는 양식 중에 발생한 사망, 발아 불량, 멸실, 유실 및 도망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사고로 한다.
3.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제1항의 정령이 정하는 양식 수산동식물이고, 전항의 공제 사고 가운데 질병에 의한 사망에 대하여 제12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준공제부금을 정할 경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양식업 종류에 관한 정령이 정하는 양식 수산동식물에 대해서는 질병에 의한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지 않는다.

제116조 (피공제자의 자격) 양식 공제의 피공제자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 절에 있어서 “피공제 자격자”라고 함)는 양식 공제 대상인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양식업을 경영하는 중소 어업자이면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인 자로 한다.

2.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의 성립에 따라 피공제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 (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을 조합 간에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대상 양식업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양식업에 관한 양식 공제의 피공제 자격자이고 해당 공제계약의 성립에 따라 피공제자가 되는 자로 한정한다.

제118조 (공제계약의 체결 제한) 양식 공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업의 종류별로, 피공제자가 되는 자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지선 수면을 나누어 정하는 일정 수역(이하 “단위어장구역”이라고 함) 내에서 해당되는 자가 경영하는 해당 종류의 양식업에 관한 양식 수산동식물로 공제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공제목적으로 하며, 해당 양식업에서 해당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공제책임기간 동안에 추가하는 양식 수산동식물(해당 양식 수산동식물과 동종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공제목적으로 하겠다는 약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당되는 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1의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에 있어서 공제목적으로 하는 양식 수산동식물(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양식 수산동식물을 제외함)은 중복하여 다른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에서 공제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18조의 2(공제사고로 하지 않는 취지의 제기) 양식 공제의 피공제 자격자는 그 자가 경영하는 양식업에 관한 양식 수산동식물이 제115조제1항의 정령이 정하는 양식 수산동식물이고, 동조 제3항의 정령이 정하는 것 이외일 때는 공제목적의 종류별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의 공제사고 가운데 질병에 의한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제기가 있었을 때는 해당 제기에 관한 공제계약에 있어서는 제115조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의 공제사고 가운데 해당 제기에 관한 것을 공제사고로 하지 않는다.

제119조 (공제책임기간) 양식 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은 대상 양식업의 종류별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류의 양식업의 양식 시기(연중무휴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간)를 기준으로 공제규정 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120조 (공제금액) 양식 공제의 공제금액은 공제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 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양식업의 종류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장관이 미리 최고 한도를 정한 때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3. 양식 공제의 공제금액은 공제금이 지불되었을 때는 해당 지불에 관한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지불된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만 감액한다.
4. 양식 공제의 공제가액이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목적인 양식 수산동식물의 추가로 인해 증가된 경우, 피공제자는 공제책임기간의 도중이라도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증가된 비율 범위 내에서 양식 공제의 공제금액 증액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공제자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제책임기간 가운데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공제부금을 지불해야 하며, 해당 공제금액의 증액은 조합이 해당 피공제자로부터 해당 공제부금을 지불(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지불될 경우에는 지불 첫 회)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1조 (공제가액) 전조 제1항의 공제가액은 공제목적의 종류인 양식 수산동식물별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당 공제가액에 공제목적인 해당 양식 수산동식물(해당 공제책임기간 동안에 추가되는 것을 포함)의 수량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단위당 공제가액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식 수산동식물과 동종인 수산동식물을 해당 양식업에 관한 표준적인 경영으로 양식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해당 수산동식물 양식의 표준적인 종료 시까지의 해당 양식 관련 경비의 합계액을 기초로, 해당 표준적인 경영에서의 해당 양식의 시작 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산출되는 경과 기간별 해당 경비의 금액으로서 조합이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에 의해 공제계약별로 해당 공제목적의 공제책임기간의 종료 시의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2조 (순공제부금율) 양식 공제의 순공제부금율은 대상 양식업의 종류와 기타 위험의 정도를 구분하는 요인이 되는 사항으로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것에 따른 다음 항의 기준공제부금율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2. 농림수산성 장관은 양식 공제에 대하여 양식업의 종류와 기타 전항의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기준공제부금율을 정해야 한다.

제123조 (전보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 공제목적의 종류인 양식 수산동식물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양식 수산동식물의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일정 단위마다 해당 단위에 관한 공제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조합은 해당 단위에 관한 공제목적에 대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전쟁이나 기타 변란에 의한 손해, 도난에 의한 손해, 이상 적조에 의한 손해와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손해에 대하여 조합은 전보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이상 적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경영하는 양식업이고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관한 양식 공제의 공제계약에 이상 적조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 (공제금) 양식 공제의 공제금은 공제계약별로 동일한 원인에 의한 공제사고에서 비롯된 손해에 관한 공제목적의 수량(전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전보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에 관한 공제목적의 수량을 제외하며, 이하 “손해 수량”이라고 함)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해당 공제사고의 발생 직전 해당 공제목적의 수량(이하 “직전 수량”이라고 함)에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수량 이상일 경우에 지불한다. 공제금의 금액은 해당 공제목적에 관한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액에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공제목적의 종류인 양식 수산동식물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식업에 관한 경영 사정 및 공제사고가 발생한 양상에 비추어 공제금 지불에 대하여 특례를 정해야 하는 다음 각호의 종류의 양식업에 관한 양식 공제의 양식 수산동식물 관련 공제금(제2호의 종류인 양식업에 대해서는 동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공제사고에 해당되는 사고이고 동호의 공제규정으로 지정하는 단위어장구역에 있는 것에서 비롯된 손해에 관한 공제금에 한함)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양식업에 관한 양식 공제의 경우, 공제금은 공제계약별로 해당 공제책임기간의 해당 공제목적에 관한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합계가 해

당 공제가액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지불한다. 공제금의 금액은 공제계약별로 해당 손해액의 합계 중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2. 전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양식업 이외의 양식업이고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양식 공제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공제사고에 해당되는 사고이고 해당 양식 공제의 공제사고가 발생한 양상과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공제규정으로 지정하는 단위어장구역에 있는 것으로 비롯된 손해에 관한 공제금은 공제계약별로 해당 손해 수량이 해당 직전 수량에 전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해당 비율 대비 해당 양식업에 관한 양식 공제의 공제사고가 발생한 양상에 따라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공제규정으로 해당 단위어장구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비율. 이하 이 조에 있어서 “지정 비율”이라고 함)이 클 경우에는 지정 비율)을 곱하여 구한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 지불한다. 공제금의 금액은 공제계약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공제사고에 해당되는 사고에서 비롯된 해당 공제목적에 관한 손해액에서 직전 수량으로 지정 비율, 해당 공제목적인 제121조제1항의 단위당 공제가액 및 제5항의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제4항에 있어서 “공제 금액”이라고 함)을 뺀 금액에,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공제목적의 종류인 양식 수산동식물이고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양식업에 관한 양식 공제이고 공제금이 지불될 경우에 관해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특약이 있는 공제계약 관련 공제금은 전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특약에 있어서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될 때에 지불한다.
 1. 다음 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양식업 이외의 양식업이고 전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공제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 이외에 해당 공제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2. 전항 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양식업 이외의 양식업이고 정령으로 정하

- 는 종류인 것에 대해서는 손해 수량이 직전 수량에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해당 비율 대비 지정 비율이 클 경우에는 지정 비율)을 곱하여 구한 수량을 밑돌 경우에 해당 공제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3.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
 4.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양식업에 관한 양식 공제이고 공제금의 금액 산정방법에 관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특약이 있는 공제계약에 관한 것의 공제금 금액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계약의 특약에 따라 산정한 금액(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손해에 관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공제목적의 종류인 양식 수산동식물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액은 해당 공제사고에 관한 손해 수량에 해당 공제목적인 제121조제1항의 단위당 공제가액을 곱한 후, 여기에 해당 공제책임기간의 시작일부터 해당 공제사고의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맞추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제124조의 2(계속 신청 특약)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이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것에 한함)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와 함께 계속 신청 특약을 둘 수 있다.

2. 전항의 계속 신청 특약은 체결되는 공제계약(이하 이 조에 있어서 “당초 계약”이라고 함)에 관한 공제책임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후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책임기간의 시작일이 도래하는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이고 당초 계약에 관한 양식업의 종류 및 단위어장구역과 양식업의 종류 및 단위어장구역이 동일한 것(이하 이 조에 있어서 “계속 계약”이라고 함)의 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계속 계약에 관한 제80조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 및 전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하는 공제금이 지불될 경우

및 공제금의 금액 산정방법이 당초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해당 신청기간의 종료일에 제80조제1항의 체결 신청이 있던 것에 대한 특약으로 한다.

3. 계속 계약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은 피공제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이고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신청 특약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밀돌 수 없다.
4. 당초 계약에 관한 공제책임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후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책임기간의 시작일이 도래하는 계속 계약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은 전항의 규정에 따르되, 계속 신청 특약과 관계없이 해당 계속 계약의 직전 공제계약의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을 웃도는 비율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제1항의 계속 신청 특약에 대해서는 제113조의 2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5조 (보험법의 준용) 양식 공제에 대해서는 보험법 제29조(잔존물 대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특정 양식 공제

제125조의 2(특정 양식 공제의 대상 양식업 및 구분) 특정 양식 공제는 정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하 “특정 양식업”이라고 함)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대상으로 하는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제125조의 3(피공제자의 자격) 특정 양식 공제의 피공제자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 절에 있어서 “피공제 자격자”라고 함)는 특정 양식업의 종류별로 다음에 나타내는 바와 같다.

1. 해당 특정 양식업을 경영하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인 중소 어업자
2. 조합원(해당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특정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정하는 일정한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특정 양식업을 경영하는 중소 어업자의 3분의 2 이상의

- 자가 공제부금의 분담 및 공제금의 배분방법 등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규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조합원에 한함)
2.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의 성립에 따라 피공제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5조의 4(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을 조합 간에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대상 특정 양식업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특정 양식업에 관한 특정 양식 공제의 피공제 자격자이고 해당 공제계약의 성립에 따라 피공제자가 되는 자로 한정한다.

제125조의 5(공제계약의 체결 제한) 1의 특정 양식업에 관한 특정 양식 공제 또는 양식 공제의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양식업에 관한 피공제 자격자는 해당 특정 양식업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책임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제책임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에 관한 다른 특정 양식 공제 또는 양식 공제의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25조의 6(공제계약의 체결 신청 등) 제125조의 3 제1항제2호의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구역별로 구역 내 특정 양식 업자(해당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면서 해당 특정 양식업을 경영하는 피공제 자격자이고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동일)의 3분의 2 이상의 자가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의 체결 신청을 하거나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으로서 동호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 동의에 대하여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10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 있었을 때는 구역 내 특정 양식 업자(해당 공시가 있는 후에 구역 내 특정 양식 업자가 되는 자를 포함)는 조합에 해당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 계약 체결 신청을 하거나 동호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해야 한다. 해당 특정 양식 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이 종료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제125조의 3 제1항제2호에 나타내는 조합원은 동호에 규정하는 규약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졌을 때는 조합에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 체결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특정 양식 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이 종료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제10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의 체결 신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 설정에 대하여 동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내 특정 양식 업자의 동의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125조의 7(공제책임기간) 특정 양식 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은 대상으로 하는 특정 양식업의 종류별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류의 특정 양식업의 양식시기(연중무휴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간)를 기준으로 공제규정 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125조의 8(공제금액) 특정 양식 공제의 공제금액은 공제한도액(피공제자가 제125조의 3제1항제2호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동호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한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단위공제한도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 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금액을 정할 경우, 특정 양식업의 종류 가운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장관이 미리 최고 한도를 정했을 때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제125조의 9(공제한도액 등) 전조 제1항의 공제한도액은 공제계약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공제 자격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과거 일정 연간의 양식에 관한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피공제 자격자의 해당 특정 양식업에 관한 경영 사정, 해당 피공제 자격자와 해당 특정 양식업에 관해 유사한 사정이 존재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에 관한 특정 양식 공제의 다른 피공제 자격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과거 일정 연간의 양식에 관한 생산금액과 기타 해당 지역에서의 양식업사정을 감안하여 조합이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피

공제 자격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2. 전조 제1항의 단위공제한도액은 공제계약별 및 제125조의 3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한 중소 어업자별로 해당 중소 어업자를 전항의 피공제 자격자로 했을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한도액 또는 단위공제한도액을 정할 경우, 제1항의 생산금액은 해당 특정 양식업의 양식에 관한 수산동식물에 의한 수입금액(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으로 간주되는 것의 금액을 포함)으로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이 인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제125조의 10(순공제부금율) 특정 양식 공제의 순공제부금율은 대상으로 하는 특정 양식업의 종류와 기타 위험의 정도를 구분하는 요인이 되는 사항으로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음 항의 위험등급에 관한 동항의 기준공제부금율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2. 농림수산성 장관은 특정 양식 공제에 대하여 특정 양식업의 종류와 기타 전항의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구분별로 기준공제부금율을 정해야 한다.

제125조의 11(공제금) 특정 양식 공제(다음 항에 나타내는 것을 제외함)의 공제금은 공제계약별로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양식에 관한 생산금액이 해당 공제한도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양식에 관한 생산수량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과거 일정 연간의 양식에 관한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이 정하는 기준 생산수량에 1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수치를 곱하여 구한 수량에 미치지 않을 때에 지불한다. 공제금의 금액은 공제한도액에서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양식에 관한 생산금액을 뺀 금액에,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양식에 관한 생산수량의 해당 기준 생산수량에 대한 비율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 및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2. 피공제자가 제125조의 3 제1항제2호에 나타내는 조합원인 특정 양식 공제의 공제금은 공제계약별로 동호에 규정하는 규약을 정한 중소 어업자(이하 이 항에 있어서 “특정 중소 어업자”라고 함) 가운데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양식에 관한 생산금액이 해당 단위공제한도액에 미치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에, 해당 특정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양식에 관한 생산수량의 합계 수량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과거 일정 연간의 양식에 관한 생산수량의 합계 수량을 기준으로 조합이 정하는 기준 생산수량(제2호에 있어서 “기준 생산수량”이라고 함)에 전항의 수치를 곱하여 구한 수량에 미치지 않을 때에 지불한다. 공제금의 금액은 해당 단위공제한도액에 미치지 않은 특정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단위공제한도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특정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양식에 관한 생산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에, 다음 각호에 나타내는 비율 전체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조합원에 관한 특정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양식에 관한 생산금액 합계의 해당 특정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단위공제한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비율
2. 해당 조합원에 관한 특정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양식에 관한 생산수량 합계 수량의 기준 생산수량에 대한 비율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비율
3. 해당 조합원에 관한 특정 중소 어업자 모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종류에 관한 전항의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비율
4. 공제금액의 해당 조합원에 관한 특정 중소 어업자 모두를 통틀어 단위공제한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3.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특정 양식업에 관한 특정 양식 공제이고,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될 때의 공제금 지불에 관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특약이 있는 공제계약 관련 공제금은 전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계약의 특약에 있어서 공제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지불한다. 금액은 해당 공제계약의 특약에 따라 산정한 금액(피공제자가 제125조의 3제1항제2호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그 금액에 전항 제1호에 나타내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에,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공제책임기간 동안의 양식 관련 생산수량의 해당 기준 생산수량에 대한 비율에 관한 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피공제자가 동조 제1항제2호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전항 제2호에 나타내는 비율), 해당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해당 특정 양식업의 종류에 관한 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피공제자가 동조 제1항제2호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전항 제3호에 나타내는 비율) 및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 비율(피공제자가 동조 제1항제2호에 나타내는 조합원일 때는 전항 제4호에 나타내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생산금액에 대해서는 제125조의 9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5조의 12(계속 신청 특약)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와 함께 계속 신청 특약을 둘 수 있다.

2. 전항의 계속 신청 특약은 체결되는 공제계약(이하 이 조에 있어서 “당초 계약”이라고 함)에 관한 공제책임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후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책임기간 시작일이 도래하는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이고 당초 계약에 관한 특정 양식업의 종류와 특정 양식업의 종류가 동일한 것(이하 이 조에 있어서 “계속 계약”이라고 함)의 모두에 대하여 각각의 계속 계약에 관한 제80조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 비율 및 전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하는 공제금이 지불될 경우 및 그 공제금의 금액 산정방법이 당초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해당 신청기간의 종료일에 제80조제1항의 체결 신청이 있던 것에 대한 특약으로 한다.

3. 계속 계약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 비율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13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계속 계약의 공제한도액 또는 단위공제한도액에 대해서는 제113조의 2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항의 계속 신청 특약에 대해서는 제113조의 2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어업시설 공제

제126조 (공제목적 및 공제사고) 어업시설 공제의 공제목적은 양식 시설 및 어망, 기타 어구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어업시설 공제의 공제사고는 공제목적인 양식 시설 또는 어구의 공용 중에 발생한 손괴(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물건에 한함), 멸실 및 유실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사고로 한다.

제127조 (피공제자의 자격) 어업시설 공제의 피공제자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 절에 있어서 “피공제 자격자”라고 함)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직접적인 구성원인 중소 어업자로 한다.

2. 어업시설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의 성립에 따라 피공제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 (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어업시설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을 조합 간에 체결할 수 있는 자는 피공제 자격자로 해당 공제계약의 성립에 따라 피공제자가 되는 자로 한정한다.

제129조 (공제계약의 체결 제한) 1의 어업시설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에 있어서 공제목적인 양식 시설 또는 어구는 중복해서 다른 어업시설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의 공제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조합은 공제목적의 종류인 양식 시설 또는 어구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어업시설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의 공제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의 범위를 정한다.

제130조 (공제책임기간) 어업시설 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은 공제목적의 종류별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류의 양식 시설 또는 어구를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어업의 어업시기(연중무휴조업을 하는 어업에 관한 것은 1년간)를 기준으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1조 (공제금액) 어업시설 공제의 공제금액은 공제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액에 공제계약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의 비율을 정할 경우, 공제목적의 종류 가운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장관이 미리 최고 한도를 정했을 때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제132조 (공제가액) 전조 제1항의 공제가액은 공제계약별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제목적의 공제책임기간 시작 시의 가액으로서, 조합이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3조 (순공제부금율) 어업시설 공제의 순공제부금율은 공제목적의 종류, 공제책임기간의 일수, 기타 위험의 정도를 구분하는 요인이 되는 사항에 따라 조합이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비율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순공제부금율을 정할 경우, 공제목적의 종류 가운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장관이 미리 기준율을 정했을 때는 그 기준율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제134조 (전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 전쟁, 기타 변란에 의한 손해, 도난에 의한 손해,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손해에 대하여 조합은 전보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5조 (공제금) 어업시설 공제의 공제금 금액은 공제금액에 공제책임기간 시작일부터 공제사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맞추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제136조 (분할가능 양식 시설 또는 분할가능 어구에 관한 특례) 공제목적의 종류인 양식 시설 또는 어구 가운데 다수의 대체성이 있는 동종의 구성 부분(예비품 포함)으로 구성된 1의 양식 시설 또는 어구로,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략적인 부분으로 보관되며 아울러 조립 및 분해를 단순한 조작으로 가능한 것(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함)을 공제목적으로 하는 어업시설 공제에 관한 공제사고, 공제금액, 공제가액 및 공제금에 관해서는 제126조제2항, 제131조, 제132조 및 전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어업시설 공제의 적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136조의 2(공제금 지불에 관한 특약) 정령으로 정하는 양식 시설 또는 어구를 공제목적으로 하는 어업시설 공제이고, 전2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될 때의 공제금 지불에 관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특약이 있는 공제계약 관련 공제금은 이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계약의 특약으로 공제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될 때에 지불한다. 금액은 해당 공제계약의 특약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36조의 3(계속 신청 특약) 어업시설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제131조제1항의 비율이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것에 한함)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와 함께 계속 신청 특약을 둘 수 있다.

2. 전항의 계속 신청 특약은 체결되는 공제계약(이하 이 조에 있어서 “당초 계약”이라고 함)에 관한 공제책임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후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책임기간 시작일이 도래하는 어업시설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이고 당초 계약에 관한 양식 시설 또는 어구, 양식 시설 또는 어구가 동일한 것(이하 이 조에 있어서 “계속 계약”이라고 함)의 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계속 계약에 관한 제80조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131조제1항의 비율 및 전3조에 규정하는 공제금이 지불될 경우 및 해당 공제금의 금액 산정방법이 당초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에 제80조제1항의 체결 신청이 있던 것에 대한 특약으로 한다.
3. 계속 계약에 관한 제131조제1항의 비율 변경에 대해서는 제124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1항의 계속 신청 특약에 대해서는 제113조의 2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 (보험법의 준용) 어업시설 공제에 대해서는 보험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어업공제조합연합회의 어업 재공제사업 및 어업 공제사업

제1절 어업 재공제사업

제138조 (어업 재공제사업) 연합회가 실시하는 어업 재공제사업은 회원이 제77조에 나타내는 어업 공제사업에 따라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책임을 재공제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39조 (재공제 계약의 당연 성립) 회원과 피공제자 간에 어업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이에 따라 연합회와 해당 회원과의 사이에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어업 재공제사업 관련 재공제 계약이 성립한다.

제140조 (재공제 금액) 연합회의 재공제 금액은 다음에 나타내는 바와 같다.

1. 어획 공제, 양식 공제 및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계약별로 다음 각목에 나타내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가.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금액 가운데, 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 나.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특별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에 100분의 95를 밀돌지 않고 100분의 100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 다.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에서 특별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2. 어업시설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금액에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2. 전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은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금액 가운데 연합회가 조합과 그 지분에 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할 부분의 금액으로 하며, 동호에 규정하는 특별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은 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 가운데 주로 연합회가 해당 책임을 분담해야 할 부분의 금액으로서, 각각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어업의 종류, 양식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양식업의 종류,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조합의 공제책임에 관한 위험의 양상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1조 (순재공제부금) 연합회의 순재공제부금의 금액은 다음에 나타내는 바와 같다.

1. 어획 공제, 양식 공제 및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계약에 관한 공제금액에 해당 공제계약 관련 순공제부금율의 한도인 기준공제부금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가운데, 어획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어업 종류, 양식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동항의 양식업의 종류,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것에 대

해서는 동항의 특정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연합회의 재공제 책임에 관한 위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부분의 금액

2. 어업시설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재공제 금액에 공제계약에 관한 순공제부금을 (농림수산성 장관이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순공제부금을 한도 기준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제142조 (재공제 부금의 환급) 회원은 제90조제2항, 제91조제4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113조의 2 제7항(제124조의 2 제5항, 제125조의 12 제5항 및 제136조의 3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공제부금을 환급해야 할 때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대하여 재공제 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3조 (재공제금) 연합회 재공제금의 금액은 다음에 나타내는 바와 같다.

1. 어획 공제, 양식 공제 및 특정 양식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계약별로 다음 각목에 나타내는 금액
 - 가. 회원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의 금액이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에서 특별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 공제금의 금액에 제140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 나. 회원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의 금액이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에서 특별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단체책임분담 공제 금액 이하일 경우,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제140조제1항제1호 나목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과 해당 차감 금액에 동호 다목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다. 회원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의 금액이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해당 공제계약에 관한 특별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에 제140조제1항제1호 나목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

- 한 금액 및 해당 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에서 해당 특별단체책임분담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동호 다목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어업시설 공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회원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의 금액에 제140조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기후변화법제 연구 17-17-④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III)**
- 어업분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

2017년 10월 27일 印刷
2017년 10월 31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 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813-3 9336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값 7,000원